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경쟁력 제고방안

2009. 11.

연구기관: 순천대학교

농림수산물자료실



0018537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경쟁력 제고방안

2009. 11.

연구기관: 순천대학교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경쟁력 제고방안

2009. 11.

연구기관: 순천대학교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제 출 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경쟁력 제고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11월 25일

주관연구기관명: 순천대학교

연구책임자: 이 상 호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 구 원: 김 병 무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 구 원: 이 기 웅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 구 원: 송 경 환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연구보조원: 소 병 완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차 례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2. 선행연구 검토 2
- 3.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현황

- 1. 농업법인제도의 과정과 내용 7
- 2. 농업법인의 지원정책과 내용 18
- 3. 농업법인의 설립 절차 22
- 4. 농업법인제도의 문제점 25

제3장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 1.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29
- 2.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37

제4장 농업법인 유형별 효율성 분석

- 1. 효율성 분석모형 47
- 2. 효율성 분석결과 56

제5장 농업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 1. 환경분석 73
- 2. 효율성 요인 분석 79

제6장 해외사례 및 농업법인의 활성화 방안

- 1. 일본의 농업법인제도 87
- 2. 농업법인의 활성화 방안 100

제7장 요약 및 결론 107

참고 문헌 117

표 차 례

제1장

<표 1-1> 선행연구의 검토	4
------------------------	---

제2장

<표 2-1> 농업법인제도의 변천 과정	14
<표 2-2>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17
<표 2-3>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21

제3장

<표 3-1> 운영주체별 농업법인 사업체	30
<표 3-2> 농업법인의 사업체 종사자	30
<표 3-3> 농업법인 상용근로자 규모별 사업체	31
<표 3-4> 농업법인의 경지면적	32
<표 3-5> 농업법인의 농작물 재배유형별 면적	32
<표 3-6> 농업법인의 가축 사육 및 판매두수	33
<표 3-7> 농업법인의 정부 지원금	33
<표 3-8>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사업체	34
<표 3-9> 농업법인의 판매유형별 판매액	35
<표 3-10> 농업법인의 자산, 부채 및 자본	36
<표 3-11> 농업법인의 경영수지	37
<표 3-12> 농업법인의 총자본 이익률 추이	38
<표 3-13> 농업법인의 매출액 순이익률 추이	39
<표 3-14> 농업법인의 유동자산구성비 추이	41
<표 3-15> 농업법인의 유동부채 구성비 추이	41
<표 3-16> 농업법인의 법인당 유동비율 추이	42
<표 3-17> 농업법인의 매출액 증가율 추이	43
<표 3-18> 농업법인의 이익 증가율 추이	44

제4장

<표 4-1> 농업생산법인의 투입·산출 자료	57
--------------------------------	----

<표 4-2> 농업생산법인의 효율성 분석	57
<표 4-3> 농업생산법인의 기술효율성 분포	58
<표 4-4> 농업생산법인의 규모수익	59
<표 4-5> 농업생산법인의 경영효율 개선안	60
<표 4-6> 농업가공법인의 투입·산출 자료	60
<표 4-7> 농업가공법인의 효율성 분석	61
<표 4-8> 농업가공법인의 기술효율성 분포	61
<표 4-9> 농업가공법인의 규모수익	62
<표 4-10> 농업가공법인의 경영효율 개선안	63
<표 4-11> 농업유통법인의 투입·산출 자료	63
<표 4-12>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 분석	64
<표 4-13> 농업유통법인의 기술효율성 분포	64
<표 4-14> 농업유통법인의 규모수익	65
<표 4-15> 농업유통법인의 경영효율 개선안	66
<표 4-16> 농업서비스법인의 투입·산출 자료	66
<표 4-17> 농업서비스법인의 효율성 분석	67
<표 4-18> 농업서비스법인의 기술효율성 분포	67
<표 4-19> 농업서비스법인의 규모수익	68
<표 4-20> 농업서비스법인의 경영효율 개선안	69
<표 4-21> 농업기타법인의 투입·산출 자료	69
<표 4-22>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 분석	70
<표 4-23>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 분포	70
<표 4-24> 농업기타법인의 규모수익	71
<표 4-25> 농업기타법인의 경영효율 개선안	72

제5장

<표 5-1> 거시환경 분석 지표들	74
<표 5-2> 농업법인의 거시환경 분석	76
<표 5-3> 농업생산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82
<표 5-4> 농업가공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83
<표 5-5>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84
<표 5-6> 농업서비스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85
<표 5-7>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86

제6장

<표 6-1> 일본 농업법인의 매출액 규모	90
<표 6-2> 일본 농업법인 유형별 매출액 및 성장율	91
<표 6-3> 농업법인의 경영상의 이점	93
<표 6-4> 농업법인의 제도상의 이점	93
<표 6-5> 농업법인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별 업무분담관계 ·	103
<표 6-6> 농업법인제도의 개선을 위한 각 주체별 업무분담관계	106

그림 차례

제2장

- <그림 2-1>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23
 <그림 2-2>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24

제3장

- <그림 3-1> 농업법인 상용근로자 규모별 사업체수 31
 <그림 3-2> 농업법인당 정부 지원금 추이 34
 <그림 3-3>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사업체 비중 35
 <그림 3-4> 농업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추이(2004~2008) 36
 <그림 3-5> 농업법인의 총자본 이익율 추이 39
 <그림 3-6> 농업법인의 법인당 매출액순이익율 40
 <그림 3-7> 농업법인의 유동자산 구성비 추이 41
 <그림 3-8> 농업법인의 유동부채 구성비 추이 42
 <그림 3-9> 농업법인의 유동비율 추이 43
 <그림 3-10> 농업법인의 매출액 증가율 추이 44
 <그림 3-11> 농업법인의 이익 증가율 추이 45

제4장

- <그림 4-1> 투입물의 효율성 49
 <그림 4-2> 산출물의 효율성 50

제5장

- <그림 5-1> 산업내의 경쟁 결정요인 77

제6장

- <그림 6-1> 일본 농업법인의 종류 88
 <그림 6-2> 일본농업법인의 회사 형태 90
 <그림 6-3> 일본농업법인의 소비자교류 현황 91
 <그림 6-4> 일본농업법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92
 <그림 6-5> 일본농업법인의 협동조합 가입 현황 92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필요성

WTO/DDA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이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조직화되고 규모화된 생산주체 육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품목을 중심으로 작목반·지역농협·품목별 전국협의회 등이 조직되어 산지 유통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이들 조직은 생산·출하 기능에 한정되어 소비자 기호와 시장요구에 걸맞은 산지조직으로서 역할 수행은 미미하였다.

농업법인제도는 1990년 기존의 산지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법개정 및 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농업생산의 협업화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농업경영체가 농업생산 외에 유통·가공·판매 등 관련 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농기업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설립목적 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정과 관리가 미비하여 농업법인제도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고, 유명부실하거나 부실경영 법인이체가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법인은 각 운영 및 사업분야별로 상이

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990년 제정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되었으며, 2008년 현재 6,003여개의 농업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2009년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 및 지원방안이 명시되었다.

2008년 현재 운영형태별로는 농업생산관련 사업체가 39.9%를 차지하고, 가공판매는 16.0%, 유통판매는 21.9%, 농업서비스 6.9%, 기타 15.3%로 다양한 형태의 농업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업법인은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체간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경영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¹⁾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및 운영방식이 상이한 농업법인의 경영특성을 고려하여 경쟁력 제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형별 사례조사를 통해 농업법인 경영체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리고 각 법인 경영체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비효율적인 법인의 효율개선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 및 효율성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유형별로 차별화된 경쟁력 제고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농업법인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크게 농업법인 경영체의 경영실태파악과 경영정책개선, 운영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농업법인 정책방향과 개선, 농업법인제도 개선, 농업법인 마케팅역량 강화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농업법인에 대해 개별 경영체로서의 경영실태 파악과 그에 맞는 경영 및

1)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된 농어업법인체 통계조사 자료 중 농업법인의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 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였다.

정책개선방향을 제시 한 연구들이다. 김병택(1992)은 복합경영유형의 영농주체, 수도 단작지대의 농가경제, 경영유형별 경영실태와 법인 경영체로서 위탁영농회사의 영농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농업생산에 있어 생산주체의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조광호(1998)는 축산 영농조합법인의 경영에 대한 미시적 분석으로 41개 축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생산 중심형, 생산+공동판매형, 자재공동구입 및 공동출하형, 시설장비 공동이용형, 사료제조 분뇨처리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육성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성호(1999)는 농업회사법인을 면접조사하여 이들의 매출액 기준으로 영농대행형·농업생산형·가공유통형으로 유형화하여 운영내용을 조직·사업·경영성과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또한 기계중심형 법인과 시설중심형 법인으로 재분류하여 그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김정호(1999)는 농림사업을 수혜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 평가에서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박문호·전익수(2000)는 농업법인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적 체질을 강화하여 지역농업의 중심세력으로 농업법인의 발전을 유도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제도 및 경영 개선방안으로는 기존의 농업법인 중에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그 목적에 맞게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유명 무실한 법인의 해산조치를 제안했다. 또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높이고 영세법인의 과도한 시설투자를 억제하며 농협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다. 김정호·박문호(1994)는 영농조합법인 운영의 초기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협업경영이 본질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그 취지에 부합하는 조합원의 출자는 저조하고 자본금을 정책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법인경영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을 생산조합형과 유통조합형으로 구분하여 정책지원을 차등화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호외 2인(1997)은 1990년대 중반까지의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한 다음, 설립자금 지원을 개선하고, 법인경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부실법인에 대한 자진해산 유도 및 합병 추진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농업법인의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김정호·김홍배(1990)는 농업구조 개선이라는 틀 속에서 농업경영 단위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장래의 농업발전 주체인 상업적 전업농의 육성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 농가의 성장을 보완하기 위한 위탁영농조직 및 영농조합 등 영농조직의 육성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김정호(2004)는 기업적 농업경영 사례 분석을 통해 기업농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농업경영체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농업경영체

관련 세제를 포함한 경영체 지원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넷째, 농업법인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김수석·박석두(2006)는 우리나라 농업법인들의 설립현황과 농업법인관련 제도, 운영 및 관리실태, 문제점들을 지적하였고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농업법인 제도의 개편으로 3단계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1단계는 현행 농업법인제도의 관리·운영상 문제 해결, 2단계는 가족농형태의 유한농업법인 도입, 3단계 기존 농업법인을 생산법인과 서비스법인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제시하였다.

<표 1-1> 선행연구의 검토

연도	연구자	지역	연구 방향	세부 내용
1990	김정호 김홍배	전국	◦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관련연구	◦ 농업구조 개선의 틀 속에서 농업경영 단위를 육성하기 위한 목표 및 방법을 제시
1992	김병택	경남	◦ 농업생산주체의 육성방향 제시	◦ 수도작과 시설원에 농가와 위탁영농회사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생산주체의 육성방안 제시 및 법인체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1994	김정호 박문호	전국	◦ 영농조합법인 운영의 초기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출자저조와 자본금을 정책 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 지적 ◦ 법인경영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
1995	김준오	전국	◦ 영농조합법인 도입과 협업농으로서의 성격변질에 대한 문제 제기	◦ 농산물 유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협의 경쟁관계에 대한 문제점 제기
1997	김정호 외 2인	전국	◦ 농업법인 운영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설립자금 지원에 의한 농업법인 설립의 과열을 막기 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정책지원 수정 ◦ 법인경영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 훈련 실시 ◦ 부실법인에 대한 자진해산 유도 및 합병 추진 등 개선 방안 제시
1998	조광호	전남	◦ 축산영농조합법인의 경영에 대한 미시적 분석	◦ 41개 축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유형별 육성 방안 제시
1999	박성호	전국	◦ 농업회사법인을 사업유형화 및 경영성과 비교분	◦ 19개소의 농업회사법인을 면접조사하여 매출액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운영내용을 조직사업·경영성과의 세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
	김정호	전국	◦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그 성과 분석	◦ 농림사업을 수혜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경영실태 평가
	박광서	전남	◦ 지역 농업법인경영체 운영사례 분석	◦ 농업법인의 운영상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
2000	박문호 전익수	전국	◦ 농업법인 제도 및 경영 개선 방안 제시	◦ 유명무실한 법인의 해산 조치 제안 ◦ 자기자본의 비율을 높이고 영세법인의 과도한 시설투자를 억제하며 농협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제안
2004	김정호	전국	◦ 기업농의 정책적 개선 방안 제시	◦ 기업적 농업경영 사례 분석 ◦ 진입규제 완화 ◦ 세제 및 경영체 지원 강화 제안
2006	김수석 박석두	전국	◦ 농업법인의 제도 자체에 연구중점	◦ 농업법인의 제도적 틀의 원초적 한계와 문제 ◦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 제도적 틀의 개편사항과 제도운영상의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
2007	서성천 김정호	전국	◦ 농업법인의 마케팅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마케팅 수행 능력과 역량을 제고하기위한 방안 도출	◦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법인의 마케팅 관련 사례 조사 ◦ 농업법인의 마케팅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다섯째, 농업법인의 마케팅에 관한 연구이다. 서성천·김정호(2007)는 농업법인들의 마케팅 활동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마케팅활동에 대한 제약요인들을 도출하고 극복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농업법인의 마케팅 관련 사례를 조사하고 다양한 형태의 마케팅활동들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둘째, 농업법인들이 활성화된 마케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과 부(負)의 파급 영향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제약조건들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는 방안들을 탐색하였다. 셋째, 최종적으로 농업법인들의 마케팅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 국내외 선행연구 및 분석모형 검토
 - 농업법인체 관련 선행연구 검토
 - 효율성 분석 모형 검토
 - 해외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국내 농업법인 유형별 경영실태 분석
 - 농업법인 사업형태별 문제점 조사 분석
 - 농업법인 경영체의 경영성과 분석
- 법인 경영체의 효율성 분석
 - 농업법인체의 효율성 분석
 - 효율적인 농업법인과 비효율적인 농업법인의 분류
 - 비효율적인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개선방안 도출
- 효율성 격차 요인 분석
 - 농업법인의 효율성 차이

-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농업법인의 발전방안
 - 농업법인의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
 - 정책대안 제시
 - 제도적, 법률적 개선방안

3.2.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조사 및 기초통계
 - 농업법인체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경영체의 효율성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 농업법인체 설문 및 사례조사
 - 농업법인체 설문조사
 - 직접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성공요인 도출
- 효율성 분석 및 효율성 요인 분석
 - 법인체의 효율성 분석
 - 농업법인체의 효율성 격차 요인 분석
- 관련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
 - 농림수산식품부 내의 담당자, 외부기관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와 자문 등을 통해 농업법인체 발전방향 등에 대한 의견 청취

제2장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현황

1. 농업법인제도의 과정과 내용

1.1.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배경

농업법인제도는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방침이 정해지고,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농업법인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배경은 ① 농산물시장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수산업 경영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농수산업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② 농어촌공업의 육성을 통해 농어민의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농어촌소득원을 확충하며, ③ 전업농어가·농어민후계자·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육성·지원하고 농업기계화의 촉진과 농수산업 특정연구사업 및 영세농어의 안정된 전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영농주체(전업농·후계자·영농조합법인)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농업기계화와 위탁영농회사를 통해 경작 및 영농대행을 유도한다는 것이었다.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은 실질적인 농업구조개선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① 농림수산업 구조개선의 촉진, ②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수요 개발,

③ 농외소득원 개발 촉진, ④ 농어촌 정주권 개발, ⑤ 농어민 부담 경감과 농어가 경제 안정, ⑥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예시 보완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⑦ 농수산행정 체계의 개선 등을 중점 시책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제정되었으며, 농지유동화 사업·농업진흥지역제도·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설립·농림수산부문 특정연구 및 개발사업 시행·면 소재지 정주권 개발계획 수립·농지개량조합비 보조 확대 등 다양한 후속대책이 시행되었다. 이후 1991년 7월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통해 농어촌의 구조개선이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확정되었다.

결국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는 농업구조개선의 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법제화되었으며, 그 시발점은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비롯되었으며 1990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법적 근거로 하고, 1991년 「농어촌구조개선대책」에 의해 재정적 뒷받침을 얻어 시행되게 되었다.

1.2. 농업법인제도의 변천 과정

농업법인제도는 1990년에 도입된 이래 1993년과 1994년, 1999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수정되었다. 1999년 2월에는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이 새로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바뀐 데 이어 2003년에 이 법이 개정되었으나 내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2009년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1. 1993년 개정 내용

1993년 6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에 의해 수정된 내용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내용과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내용 등 네가지였는데, 개정방향은 조합법인의 사업범위와 조합원 자격 및 출자면적의 확대, 위탁영농회사 설립 주체의 다양화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이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농가소득의 증대를 도모”하는 것에서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는 “농산물의 공동 출하와 가공·수출” 등이 추가됨으로써 영농조합법인도 농산물 유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둘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3조의 2(농지소유 상한의 특례)가 신설되어 '1가구당' 농지소유상한 면적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10ha,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ha로 확대됨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1인당' 소유상한면적이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에서 '1ha 미만 농지소유자'라는 규정은 사라졌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현금출자 제한 규정도 폐지되었지만, 1인의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 이하로 한다는 규정은 유지되었다. 조합원의 자격 상한과 출자액 상한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의 경영면적도 5인 조합의 경우 출자만으로 최대 50ha까지 가능해졌다.

셋째, 영농조합법인은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은 농협·축협·수협·임협·엽연초협·인삼협 및 그 중앙회와 조합법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 전문생산자조직(동 법 시행령 제5조의 2)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이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넷째,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목적에서 "농민의 농업노동력 부족"을 "농민·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정하고, 위탁영농의 상한(3ha)을 없앴다. 이로써 위탁영농회사의 설립주체는 농민에서 농민·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으로 확대되었다.

1.2.2. 1994년 개정 내용

1994년 12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 이유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산업인력으로서의 농업인 등을 육성하고, 적정규모의 법인경영체의 설립을 지원하여 가족농 체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당해 시·군 거주 및 3년 이상 영농종사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자단체와 농업인이 아닌 자도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위탁영농회사를 농업회사법인으로 고쳐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목적에서 "농민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라는 내용이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로 수정되었다. 개정 이유에 제시된 "가족농체제를 보완하는 법인경영체의 설립 지원"이 곧 '협업적 농업경영'이란 용어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당해 시·군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서 “농업인과 생산물의 생산자단체 중 정관이 정하는 자”로 개정되었다. 법인 사무소 소재지의 시·군 및 연접 시·군이라는 거주지 요건과 3년이라는 영농기간 요건이 폐지된 것이다.

셋째,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농지소유 상한 면적만큼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6조 2항)에서 농지소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는 「농지법」이 제정됨으로써 농지소유에 관한 규정은 모두 그 법에 일괄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농지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로서 농업인의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과반이고, 농업인이 대표사원을 맡으며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사원의 1/2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을 ‘농업법인’으로 정의하여 농업인과 동등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컨대, 농업진흥지역 바깥 농지의 소유상한은 농가 1호당 5ha로 제한되는데, 농업법인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ha씩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식회사를 제외한 형태의 회사법인도 출자액 비중, 대표, 업무집행권 소지 사원(이사)의 수 등에서 농업인이 과반을 차지하고 대표를 맡을 경우 농업인과 동등하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업법인의 업종이 농업생산법인이든 농산물 판매·유통법인이든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법은 농지를 필요로 하는 분야의 농업경영을 하는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농사조합법인 중 시설·기계 공동 이용사업을 하는 1호(號)법인, 농업경영 중 양돈·양계 등 농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농업경영 분야의 회사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넷째, 농업인 또는 농산물의 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였다. 그 자격은 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자, 농지를 임대 또는 위탁하는자,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림수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 또는 가공하는 자로 하였다(시행령 6조). 또한 준조합원의 출자액 합계는 총출자액의 1/3 이하로 제한하였다(시행령 11조 2항). 영농조합법인의 사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개인·법인의 출자를 허용하되 그 비중을 제한하고 의결권을 배제하여 조합법인에 대한 농업인의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다섯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협·축협·수협·임협·엽연초생협·인삼협으로 조정되었다(시행령 15조의 2).

여섯째, 법 제7조의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규정을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을 개정하였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목적은 “농업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도모”에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과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거나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조직 형태만 다를 뿐 설립목적과 사업 범위가 동일해진 것이다.

일곱째, 농업회사법인의 조직 형태로 합명·합자·유한·주식회사가 명시되고, 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시장·군수에게 통지하는 기한이 30일로 명시되었다(시행령 15조의 3항 1호와 3호).

여덟째,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주체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 조합 외에 추가로 농업인이 아닌 자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법 제7조 2항), 그 출자액 합계는 농업회사법인 총출자액의 1/2(주식회사는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시행령 15조의 5).

아홉째,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사업 및 농작업 대행(법 제7조 1항)과 부대사업으로 영농자재의 생산·공급, 종묘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림수산물의 매취·비축, 농기계·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이 신설되었다(시행령 15조의 6).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가 농업분야 전반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1.2.3. 1999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1999년 3월 3일자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었다. 개정 이유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업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였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한도를 폐지하였다.

셋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한도를 총출자액의 1/3 이하에서 1/2 이하로 완화하였다.

1.2.4.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의 제정

1999년 2월 5일자로 「농업·농촌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리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와 제7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는 「농업·

농촌기본법」 제15(영농조합법인의 육성)와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로 옮겨졌다. 두 법의 관련 내용에 차이점은 없고, 다만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상법 제17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법제15조 5항)이 추가되었으며, 농업회사법인 설립주체에서 농지개량조합이 삭제되었다.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는 유명무실한 조합법인이 많았기 때문에 추가된 것이다.

1.2.5. 2003년 『농업·농촌 기본법』의 일부 개정

2003년 12월의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에서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는 농림부장관에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개정되었으며,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법 제15조 8항으로 신설되었다.

1.2.6. 200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

2007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업무가 농림수산부로 이관되면서 「농업·농촌 기본법」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농업 범위의 확대 및 업종 간 구별기준 명확화로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버섯·묘목 재배업을 추가하고, 원예작물생산업을 채소·과실·화훼작물재배업으로 구분하였으며 수생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의 사육활동을 축산업에 포함시켰다. 또한 농업인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1.2.7. 2009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9년 11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내용들이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제17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등), 제1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조직변경),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로 옮겨졌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써 몇가지 변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合名會社) 또는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제18조 1항). 이를 통해 영농조합법인은 해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자금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다(제20조 1항). 이를 통해 농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었다.

셋째, 농업법인 설립 이후 관리방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업법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제20조 2항). 이를 통해 농업법인의 제도적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정보에 대한 조사방안이 마련되었다.

<표 2-1> 농업법인제도의 변천 과정

구 분	1990년 제정	1993년 개정	1994년 개정	1999년 이후	2007년 이후	2009년	
근거법률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업·농촌기본법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 농업경쟁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형태	◦ 영농조합법인 ◦ 위탁영농회사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합명·합자·유한·주식)				
취지	◦ 농업경영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도모	◦ 농업경영 합리화로 농업생산성 제고 ◦ 농산물 공동출하와 가공·수출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 협업적 농업경영 통해 생산성제고 ◦ 농산물 공동출하 및 가공·수출				
농지 소유	◦ 가능 ◦ 소유상한 규정 없음	◦ 조합원 1인당 소유상한 합산면적 가능	◦ 농지법의 농업인 소유 규정 적용				
사업	◦ 농수산업과 부대사업 ◦ 공동이용시설 설치·운영 ◦ 농작업대행						
영농조합법인	설립주체	◦ 당해 시·군 거주 3년 이상 영농 1ha 미만 농지소유자	◦ 유지 ◦ 유지 ◦ 소유상한 폐지	◦ 거주지 요건 폐지 ◦ 영농기간 요건 폐지 ◦ 농업인·생산자단체 ◦ 의결권 없는 출자자=준조합원 도입		◦ 조직변경가능 - 농업회사법인의 합명 및 합자 회사로 전환	
	출자제한	◦ 농지와 현물에 한정 ◦ 1인당 총출자액의 1/3 이하	◦ 현금출자 가능 ◦ 유지	◦ 준조합원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3 이하로 제한	◦ 준조합원 출자한도 폐지		
	농협관계	◦ 농협의 준조합원 가능	◦ 농협 등 협동조합 및 다른 농업법인과 전문생산자조직법인의 조합원·준조합원 가능	◦ 생산자단체에서 다른 농업법인 및 전문생산자조직 법인 제외하고, 농협 등 각종 협동조합에 한해 조합원·준조합원 가능			
	타법준용	◦ 민법의 조합규정 ◦ 무한책임		◦ 해산명령에 상법 ◦ 176조 준용			
	취지	◦ 농업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가의 영농편의와 농업생산성 향상 도모		◦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에 의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 농작업 대행으로 영농편의 도모			
농업회사법인	설립통지		◦ 설립등기 후 시장·군수에 통지	◦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 시장·군수에 폐지 통지			
	농지소유	◦ 불가능		◦ 합명·합자·유한회사로 농업인 출자액 합계가 총출자액의 과반이고 농업인이 대표사원이며 업무집행권 보유 사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농업법인은 농업인과 동등하게 농지 소유 가능			
	사업	◦ 농업경영 ◦ 농작업대행(농가당위탁상한 3ha)	◦ 위탁상한 3ha폐지	◦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 농작업 대행 ◦ 부대사업			
	설립주체	◦ 농민	◦ 농민·생산자단체·농지개량조합	◦ 비농업인 출자 가능	◦ 농지개량조합 삭제		
	출자제한			◦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1/2 (주식회사는 1/3) 이하	◦ 주식회사의 비농업인 출자액도 총출자액의 1/2로	◦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3/4 이하	◦ 비농업인 출자액은 총출자액의 90/100 이하
	타인준용	◦ 상법의 회사규정 ◦ 유한책임		◦ 해산명령에 상법176조 준용			

1.3. 농업법인제도의 내용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어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을 명시하고, 법인설립 목적과 발기인 수,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준조합원의 자격과 권리 제한 또는 비농업인 출자자의 출자액 비율과 권리 제한,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해산명령과 청구, 농업법인의 설립·출자·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법인에 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의 설립 목적과 성격을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육성법」에 따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가 설립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설립한다. 여기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는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이다. 원칙적으로 협업경영은 법인 구성원(=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이익과 법인 구성원의 이익은 개념상 다르지만, 현실에서는 양자 간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1호(戶) 1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더욱 그렇다. 법인의 설립 목적과 성격에 의한 법인의 유형 구분은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인의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과 발기인 수 및 유한·무한책임에 대해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로 동일하다. 다만, 법인의 발기인 또는 구성원 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유한회사는 발기인 2~50인과 사원 1인 이상, 주식회사는 발기인 3인 이상으로 설립한다(이상 「상법」의 회사 종류별 설립 규정).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모두 유한책임이다.

셋째, 준조합원의 자격·권리 제한 또는 비농업인 출자자의 출자액 비율제한을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에 생산자재를 공급하거나 생산기술을 제공하는 자, 농지를 임대하거나 경영을 위탁하는 자, 조합법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대량으로 구입·유통·가

공 또는 수출하는 자, 농업인이 아닌 자로서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출자를 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는 그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업인이 아닌 자도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나, 그 출자액의 합계는 총출자액의 90/100을 초과할 수 없다.

넷째, 출자액 또는 자본금 제한을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총출자액,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1인당 출자액 모두 제한이 없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최소자본금이 정해져 있는데,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2천만 원 이상,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주식회사는 5천만 원 이상이다.

다섯째, 영농조합법인의 의결권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인 1표이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 14구좌당 1표(합명·합자·유한회사), 주식 1주당 1표(주식회사)이다.

여섯째,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조직 형태에 상관없이 농업인이 법인의 대표를 맡고, 업무집행권 소유자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일곱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협·산림조합 및 업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이다.

여덟째,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에 정하는 사업이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작업 대행과 부대사업으로서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농산물의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등을 할 수 있다(시행령 19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종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아홉째,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과 등기를 살펴보면, 조합법인은 법인으로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에는 정관 기재사항 중 조합법인의 명칭·목적·사업·사무소 소재지와 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1인당한도 및 해산사유, 대표조합원의 성명·주소, 임원의 성명·주소,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총 출자 좌수와 출자액 등을 등기하며, 창립총회의사록·정관·출자자산내역서·대표조합원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조합법인의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2주일 이내에 이전 및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열 번째, 영농조합법인은 총회의 의결, 영농조합법인의 합병·파산, 법원의 해산명

령, 조합원이 5인 미만이 된 지 1년 이내에 5인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 기타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한다(『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조합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이 2주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해야 하며, 청산이 종결된 때에도 같다(시행령 15조).

<표 2-2> 농업법인제도의 개요

구 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설립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적 농업경영(조합원의 이익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적 농업경영(법인의 이익증대)
설립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발기인수와 출자자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인 이상의 조합원(무한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자회사: 유한·무한 각 1인 이상 합명회사: 무한책임 사원 2인 이상 유한회사: 발기인 2~50인(유한책임)과 사인 1인 이상 주식회사: 발기인 3인 이상(유한책임)
준조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합법인에 생산자재 공급, 생산기술제공자 조합법인에 농지 임대, 경영 위탁자 조합법인 농산물의 대량 구입·유통·가공·수출하는 자 의결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농업인도 의결권 인정
출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현금·기타현물 출자 조합원 1인당: 무제한 준조합원 출자한도: 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현금·기타현물 출자 비농업인: 총출자액의 90/100 이하
의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1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자 1구좌당 또는 1주당 1표(주식회사)14구좌당 1표(합자·합명·유한회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농업 관련 공동 이용시설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작업 대행과 부대사업(영농자재 생산·공급, 종자 생산, 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농지소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능(농업인이 대표자 및 업무집행권자의 1/2 이상에 한함)
타법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상법 제176조 준용(법인의 해산명령)
가입가능 생산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협, 산림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2. 농업법인의 지원정책과 내용

2.1. 농업법인의 지원정책 및 보조금

농업법인 지원정책은 1990년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당시 농업법인에 대해 개별 농가와 대등한 지원 및 법인으로서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였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농가 수준의 지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계화영농단을 포함하여 농기계구입자금의 50%를 보조하였다.

1994년 6월에 수립된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농정개혁 추진 방안'을 토대로 12월에 제정된 '농림사업 통합실시요령'에서 농업법인을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정책자금의 지원을 대폭 확충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995년부터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농지 구입자금, 유통·가공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1996년 1월에는 농업법인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자금 성격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신설하였다. 시설자금은 기존의 노후·불량 시설의 보수와 대체 및 시설현대화 등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대출기간을 2~5년으로 차등화하고, 이자율은 연리 5%였다. 운전자금은 생산·가공·유통 등에 소요되는 자금과 그 밖의 법인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하여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일시 상환하도록 하였다.

1997년 1월부터 부실 농업법인 대책의 일환으로 정책사업의 자격기준을 출자액 1억 원 이상, 조합원 5가구 이상, 설립 후 1~3년 운영실적 평가 등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경영실적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연리 5%의 농기업경영자금 2,000억 원으로써 운영자금을 추가로 지원하였으며, 농업법인의 운영 현황을 카드로 작성하여 농촌지도소와 농협·축협 등에 비치하고 경영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술지도 및 경영상담 등을 강화하였다.

이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림사업의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공통지원요건과 사업별 지원요건을 적용하였으며, 사후관리기준을 강화하였다. 공통지원요건은 ①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개정 2004. 11), ② 출자금을 포함한 자기자본

금이 사업비의 자기부담금 이상 확보된 법인, ③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5인 이상 ④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⑤ 설립 후 운영 실적 1년 이상인 법인(단, 창업농후계자가 대표인 법인과 축산분노 공동처리시설은 법인 설립후), ⑥ 농업법인경영체를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부적격 구성원 유무 또는 개인사업을 위한 위장설립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선정할 것 등이었다. 사업별 지원요건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 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을 말한다.

농업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②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정산하도록 한다. ③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회계·세무·마케팅·농림정보 활용방법·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 기술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12, 공통지원요건 '차'항). ④ 한 사람이 2곳 이상의 농업법인의 조합원 또는 사원으로 참여할 경우 당해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한다. ⑥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물인 경우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⑦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⑧ 사업규모 5억 원 이상인 경우 재무제표 징구, ⑨ 사업규모 1억 원 이상인 경우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 및 영농기술 능력 진단평가와 신용평가를 실시한다.

2.2.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 지원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세의 법인세·양도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지방세의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와 법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그리고 조합원 또는 사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조치가 있다(표 2-3). 세제지

원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간에 차이가 없으며, 다만 농외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 원까지 면제하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2003.12.31 이전 설립 법인의 경우 5년간) 50%를 감면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다.

문제는 세제지원의 경우 법인세,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취득세·등록세와 법인등록세 및 재산세, 조합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 31일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표 2-3>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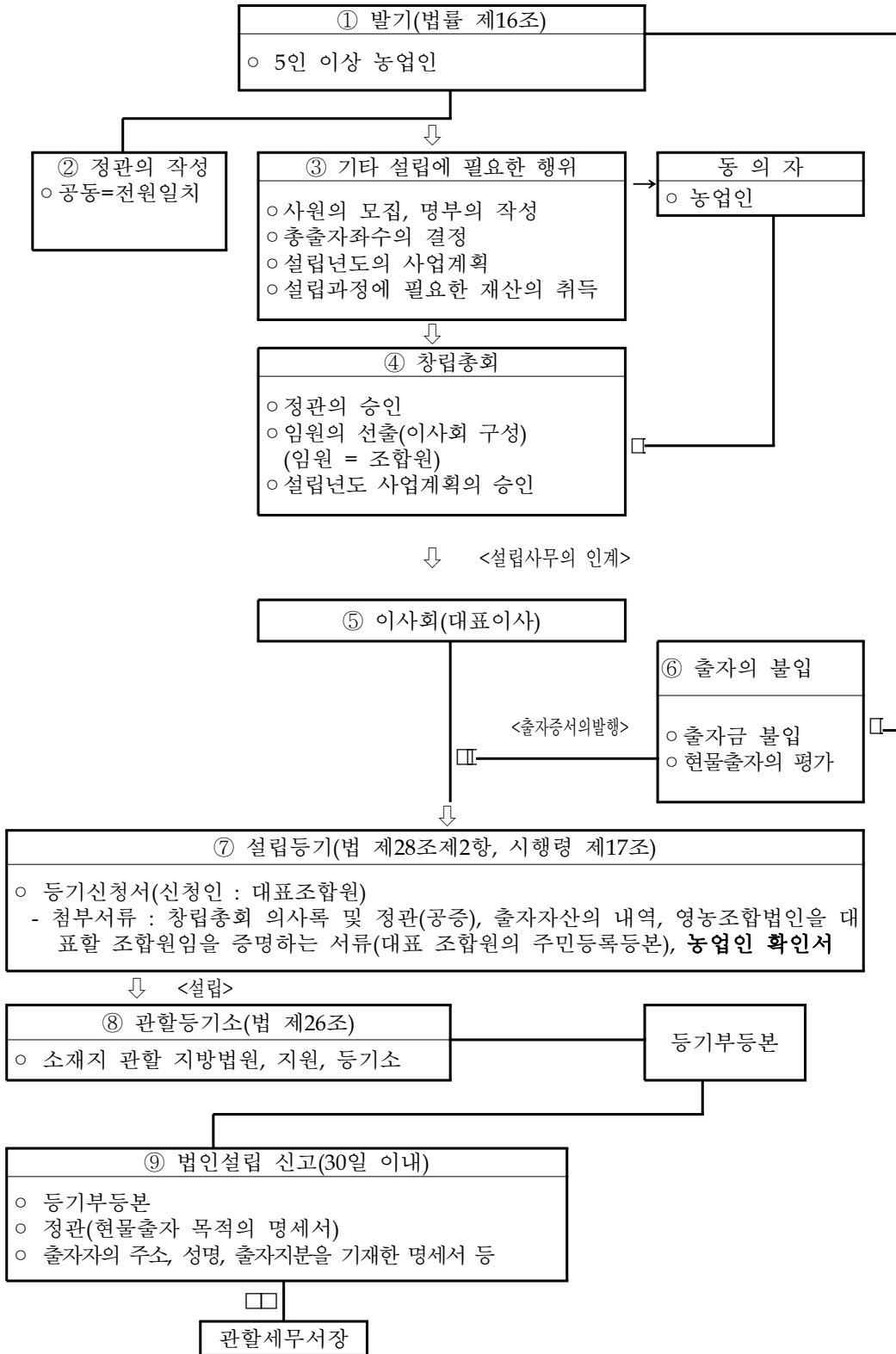
구 분	세제지원 내용
법인세	①농업소득: 면제 ②농업외소득: 면제와 감면 ◦ 영농조합법인: 면제(출자조합원당 연 1,200만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1항, 시행령 제63조 제1항 ◦ 농업회사법인: 50% 감면(최초 소득발생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03.12.31 이전 설립은 5년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국세	①8년 이상 계속 경장자가 농업법인에 양도: 면제 ②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제(2010년말까지농업법인에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부가가치세	①영세율 적용: 비료, 농약,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2008.12.31까지 공급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 신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기토산·목초액·천적 등) ②면제: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 ²⁾ (2009.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106조 제3항 ③농업용 식유류: ◦ 면제-2012.6.30까지 공급분 ◦ 75%감면-2012.7.1~2012.12.31 공급분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2 제1항 ④사후환급: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³⁾
지방세	①창업 후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 ②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 50%감면 ③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록세: 50%경감 ④법인의 설립등기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세 면제 ⁴⁾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중)
법인등록세	①법인설립 등기시: 면제(법 266조 제7항, 2009.12.31까지, 개정 중) ※지방세법 제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중)
재산세	①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 직접사용 부동산: 50% 감면 ◦ 과세기준일: 재산세는 매년 6.1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포함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2009.12.31까지, 개정중)
조합원감면	①농지 및 조지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면제(2009.12.31까지 출자분) ◦ 임야·대지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과세됨. 다만 아래의 이월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양도세가 법인에서 현물 출자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이월이 가능하게 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4항 ◦ 양도소득세이월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농지·조지는 제외)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7항
배당소득세	①농업소득의 배당소득세: 면제(2009.12.31까지의 배당소득) ②농외소득의 배당소득세: 1인당 연간 1,200만원까지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2항

2) 농작업대행·선별·포장용역은 면제되나 운반·저온저장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3)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환급은 농업인이 직접 받아야 함.
 4) 유상증자시에는 면제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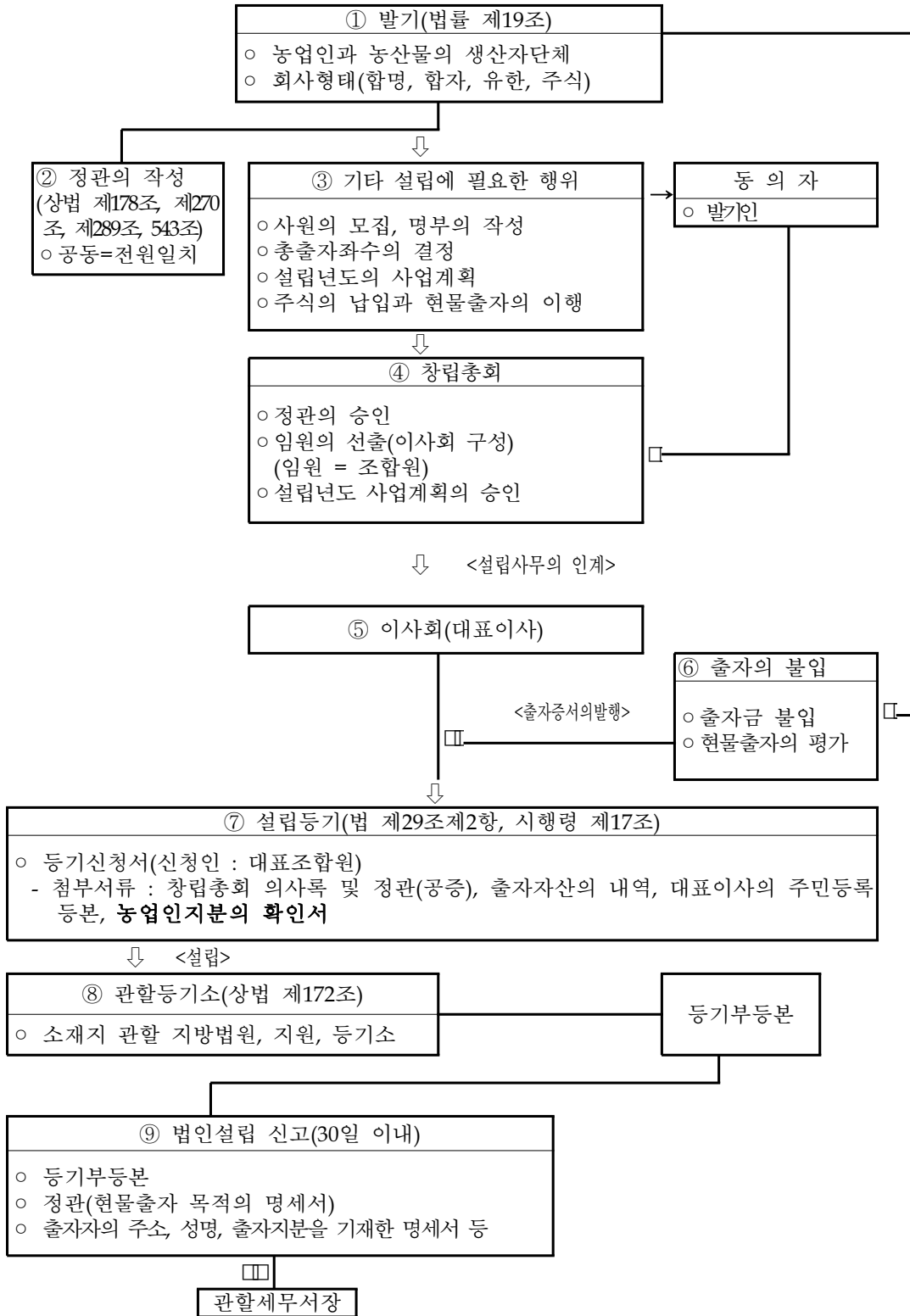
3. 농업법인의 설립 절차

법인의 발기는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단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설립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 발기후 정관을 작성하는데, 정관은 농업법인의 조직·사업·관리·운영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자치규범으로서 법인 설립시 발기인 공동으로 작성(전원 합의작성)하여야 한다. 정관을 작성하고 조합원 결성(정관과 설립취지를 찬성하고 법인에의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및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명부의 작성(설립시 조합원의 명부작성), 출자 1좌당 금액과 총출자 좌수의 결정, 설립 당해연도의 사업계획 수립, 설립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후 동의자(영농조합법인: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발기인)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창립총회는 발기인 및 창립당시의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관의 승인·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선임(이사회 구성), 출자납입에 관한 사항, 설립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의결한 후 이사회(대표이사)로 설립사무를 인계한다. 법인에의 출자는 농지·현금·기타현물로 출자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회사법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3/4을 초과할 수 없다. 출자를 불입한 조합원 등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출자증서를 발급한다. 현물출자의 경우 출자액 산정방법·출자최고한도·출자액의 납입방법 등을 정관으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설립등기는 등기신청서(신청인=대표이사) 및 첨부서류(창립총회 의사록·정관(공증)·출자자산의 내역·대표의사의 주민등록등본·농업인지부의 확인서)를 준비하여 관할등기소인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설립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그림 2-1> 영농조합법인 설립절차



<그림 2-2>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4. 농업법인제도의 문제점

4.1. 농업법인 지원정책의 문제점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농업법인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법인의 정책적 위상과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현행 농업법인제도는 1994년에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는 바, “가족농체제를 보완” 하기 위하여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구분되는 “적정규모의 법인경영체의 설립을 지원”하는 데에서 달라진 게 없다. 농업법인에 대한 농업정책은 1994~1996년에 대대적인 설립지원을 통해 부실 농업법인이 양산되자 1997년 이후 정책사업의 자격기준과 사후관리 기준을 강화하는데 머물러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농업법인제도의 도입 당시에는 농업법인의 역할을 가족경영체제의 보완 형태로 설정하였다가 1993년의 ‘신농정’부터 가족농과 대등한 경영체를 넘어 가족농의 대체형태·발전형태로 격상시켰으며, 2000년의 「식료·농업·농촌 기본법」에 ‘농업경영의 법인화’를 농업정책의 기본시책의 하나로 명시한 이후 농업경영체 육성정책의 핵심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농업법인의 발전방향과 정책적 위상의 재정립이 긴요한 시점이다.

둘째,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를 망라하는 농업법인의 사업영역 확대가 농업법인 정책의 목표 설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업법인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산물 유통 등의 서비스 사업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지불제를 비롯한 농업생산자를 대상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동시에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을 하지 않고 농업서비스업만 전담하더라도 비농업 부문의 자본투자와 비농업인의 경영참여가 일정한도로 제한되어 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의 출자는 총출자액의 90/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의 대표자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법인은 농업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도 적합하지 않고, 비농업부문의 자본유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영체가 되고 있다.

셋째, 농업법인에 대한 관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주 사무소 소재지 시·군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통계청에서

‘농어업법인사업체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책사업의 지원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 내에 어떤 농업법인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그 운영 실태는 어떤지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인경영체의 목록조차 비치되어 있지 않다. 관할 등기사무소에 법인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립등기 이후의 변화상을 파악하지 못하며, 행정관서와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농지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업위원회의 확인과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 즈음에 법인 설립자는 농업위원회를 찾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업법인은 농가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발전된 형태의 농업경영체이며 인정농업자이기 때문에 시·정·촌 당국은 우수 농업경영체로서 농업법인을 파악 및 관리하고 있다.

넷째,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그 시한이 2009년 말로 끝나게 되어 있어 시한 연장이 필요하며, 나아가 한시제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상의 우대내용을 검토하여 조세상의 우대를 계속할 것인지, 우대를 철회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우대를 계속할 사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 아닌 확정적 형태로 세제를 제도화하도록 한다.

4.2. 설립절차의 문제점

농업법인은 개별경영에 비해 정책사업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받기가 용이하며, 지원금액 규모도 크다는 이점이 있어 구매 및 판매과정에서 기존의 농협조직 등을 활용하기보다 법인체를 결성하여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법인설립은 절차상 일정한 지원자격 및 선정기준에만 해당되면 실제 확인없이 서류절차만 통과하며 법인등록이 된다. 회사법인의 경우 상법상 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조합법인의 경우 출자규모와 관계없이 농업인 5인 이상이면 설립 가능하다. 따라서 농업법인 설립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자율설립 원칙), 정책지원에 있어서는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법인설립에 대한 사전 및 사후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건실한 법인설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업법인의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경영여건·경영목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를 선택하고 시설장비의 효율적 가동을 위한 경영규모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경영참여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사업의 기대 수익성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노동력과 기술인력의 안정적인 확보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둘째, 정책지원사업의 대상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보조금 수혜를 위한 법인설립을 억제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영농경력·사업실적·구성원의 자질·자본(출자)규모·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정책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의 출자 및 자부담이 구성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시군에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정책자금으로 지원되는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3장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1.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1.1. 농업법인의 일반현황

2008년 현재 농업법인 사업체는 6,003개로 전년에 비해 8.8% 증가하였다. 법인형태 별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5,075개로 전년보다 9.8% 증가하였고, 농업회사법인은 928개로 전년보다 3.6% 증가하였다.

농업법인의 형태를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출자자 공동운영 및 대표자 단독운영은 전년보다 각각 15.0%, 13.0% 증가한 반면, 출자자 개별운영은 전년에 비해 5.4% 감소하였다

<표 3-1> 운영주체별 농업법인 사업체

(단위: 개, %, %p)

구 분		계		출 자 자 공동운영	대 표 자 단독운영	출 자 자 ¹⁾ 개별운영
			구성비			
계	2008	6,003	100.0	3,556	922	1,525
	2007	5,520	100.0	3,092	816	1,612
	증 감	483	-	464	106	-87
	증감률	8.8	-	15.0	13.0	-5.4
영농조합법인	2008	5,075	84.5	3,096	699	1,280
	2007	4,624	83.8	2,661	636	1,327
	증 감	451	0.7	435	63	-47
	증감률	9.8	-	16.3	9.9	-3.5
농업회사법인	2008	928	15.5	460	223	245
	2007	896	16.2	431	180	285
	증 감	32	-0.7	29	43	-40
	증감률	3.6	-	6.7	23.9	-14.0

주: 1) 『출자자 개별운영』은 조사표 작성대상이 아니므로 이후 결과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따라서 이하에서는 4,478개 농업법인에 대해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음.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농업법인 종사자 수는 35,392명으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하였는데, 법인당 종사자 수는 7.9명으로 전년에 비해 8.1%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법인당 고용규모가 전년에 비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2> 농업법인의 사업체 종사자

(단위: 개, 명, %)

구 분	사업체	종사자 합 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법 인 당 종사자수
			계	출자자	고 용		
2008	4,478	35,392 (100.0)	23,325 (65.9)	11,338 (32.0)	11,987 (33.9)	12,067 (34.1)	7.9
2007	3,908	33,420 (100.0)	21,828 (65.3)	10,671 (31.9)	11,157 (33.4)	11,592 (34.7)	8.6
증 감	570	1,972	1,497	667	830	475	-0.7
증감률	14.6	5.9	6.9	6.3	7.4	4.1	-8.1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상용근로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를 보면 『5인미만』 사업체가 61.4%였으며, 『5~9인』 사업체는 26.9%로 나타났다.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87.3%를 차지할 정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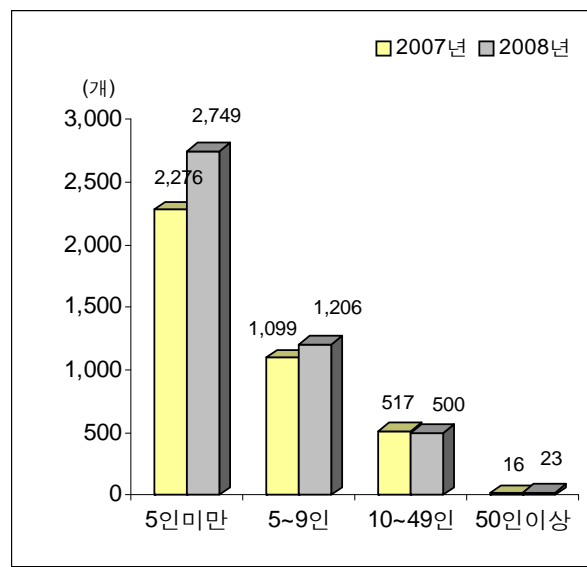
농업법인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농업법인 상용근로자 규모별 사업체

(단위: 개, %)

구 분	사업체	5인미만	5~9인	10~49인	50인이상
2008	4,478 (100.0)	2,749 (61.4)	1,206 (26.9)	500 (11.2)	23 (0.5)
2007	3,908 (100.0)	2,276 (58.2)	1,099 (28.1)	517 (13.2)	16 (0.4)
증 감	570	473	107	-17	7
증감률	14.6	20.8	9.7	-3.3	43.8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그림 3-1> 농업법인 상용근로자 규모별 사업체수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은 총 13,801ha로 전년에 비해 4.6% 증가하였다. 경지면적 중 논 면적은 46.6%, 밭면적은 53.4%를 차지했으며, 전년에 비해 각각 5.3%, 4.0%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현재 농업법인의 경지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경지면적(176만ha)의 0.8%를 차지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법인당 경지면적은 8.8ha로 전년에 비해 9.3% 감소하였는데, 법인당 경지면적 감소는 경지면적 보유 사업체가 전년에 비해 15.7% 증가한 반면, 총 경지면적은 4.6% 소폭

증가한데 기인한다. 그리고 2008년 우리나라 농가당 경지면적은 1.5ha임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법인의 규모화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표 3-4> 농업법인의 경지면적

(단위: 개, ha, %)

구 분	사업체	보 유 사업체	경지면적				법 인 당 경지면적
			계	논	밭	과수원	
2008	4,478 (100.0)	1,575 (35.2)	13,801 (100.0)	6,437 (46.6)	7,365 (53.4)	503 (3.6)	8.8
2007	3,908 (100.0)	1,361 (34.8)	13,194 (100.0)	6,114 (46.3)	7,080 (53.7)	778 (5.9)	9.7
증 감	570	214	607	323	285	-275	-0.9
증감률	14.6	15.7	4.6	5.3	4.0	-35.3	-9.3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농업법인 사업체 중 농작물 재배 사업체(1,641개)는 36.6%로 전년에 비해 16.1% 증가하였으며, 재배면적은 11.1% 증가하였다. 법인당 농작물 재배면적은 9.9ha로 전년에 비해 4.8% 감소하였다.

<표 3-5> 농업법인의 농작물 재배유형별 면적

(단위: 개, ha, %)

구 분	사업체	재 배 사업체	계		노지재배			시설재배		
			재배 면적	법인당	사업체	재배 면적	법인당	사업체	재배 면적	법인당
2008	4,478 (100.0)	1,641 (36.6)	16,307 (100.0)	9.9	1,259	14,666 (89.9)	11.6	539	1,641 (10.1)	3.0
2007	3,908 (100.0)	1,413 (36.2)	14,673 (100.0)	10.4	1,047	13,127 (89.5)	12.5	498	1,546 (10.5)	3.1
증 감	570	228	1,634	-0.5	212	1,539	-0.9	41	95	-0.1
증감률	14.6	16.1	11.1	-4.8	20.2	11.7	-7.2	8.2	6.1	-3.2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가축 사육두수 중 한육우(31.2%), 닭(17.5%), 젓소(17.2%)는 크게 증가한 반면, 돼지(2.0%)는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가축 판매두수는 전년에 비해 닭 77.0%, 한육우 63.5%,

돼지 13.2% 증가한 반면, 젓소는 47.7% 감소하였다.

<표 3-6> 농업법인의 가축 사육 및 판매두수

(단위: 개, 마리, %)

구 분	사업체	가 축 사 육 사업체 ¹⁾	구성비	가축 사육두수				가축 판매두수			
				한육우	젓소	돼지 (천마리)	닭 (천마리)	한육우	젓소	돼지 (천마리)	닭 (천마리)
2008	4,478	575	12.8	33,382	1,832	1,664	16,400	13,577	139	2,941	125,555
2007	3,908	534	13.7	25,439	1,563	1,631	13,961	8,306	266	2,597	70,943
증 감	570	41	-0.9	7,943	269	33	2,439	5,271	-127	344	54,612
증감률	14.6	7.7	-6.6	31.2	17.2	2.0	17.5	63.5	-47.7	13.2	77.0

주: 1) 가축사육 사업체에는 가축판매 사업체가 포함됨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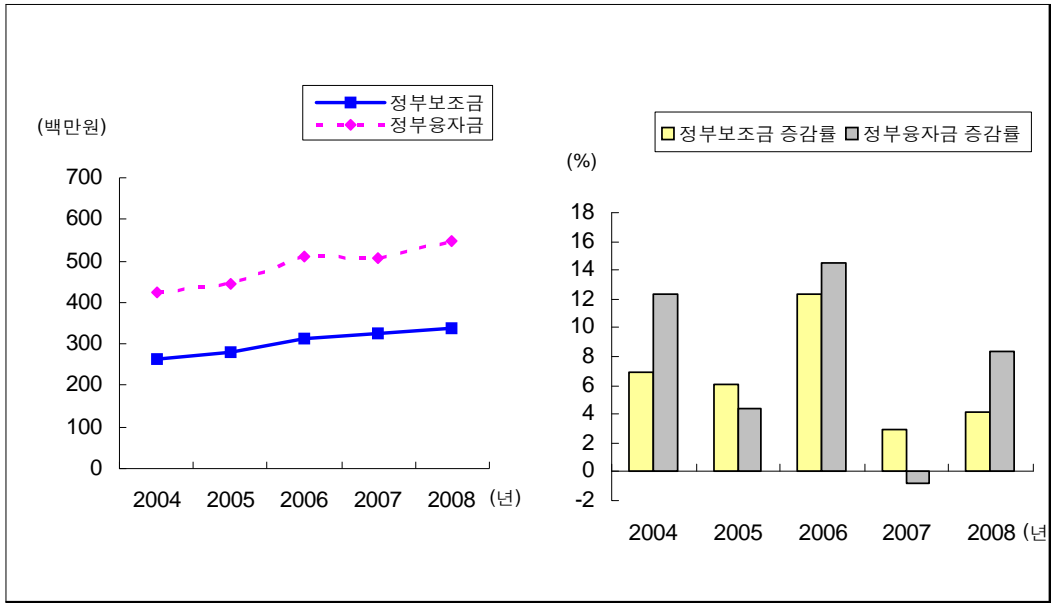
정부보조금을 받은 농업법인 사업체는 2,043개로 전년에 비해 9.6% 증가하였으며, 법인당 정부보조금 누계액은 3억 4천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4.1% 증가하였다. 정부용자금 잔액이 있는 농업법인은 766개로 전년에 비해 9.6% 감소하였지만, 법인당 정부용자금 잔액은 5억 5천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8.4% 증가하였다.

<표 3-7> 농업법인의 정부 지원금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업체	정부보조금			정부용자금		
		법인수	금액		법인수	금액	
			법인당	법인당		법인당	법인당
2008	4,478	2,043	690,284	337.9	766	419,238	547.3
2007	3,908	1,864	605,023	324.6	847	427,749	505.0
증 감	570	179	85,261	13.3	-81	-8,511	42.3
증감률	14.6	9.6	14.1	4.1	-9.6	-2.0	8.4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그림 3-2> 농업법인당 정부 지원금 추이

1.2. 농업법인의 사업유형

농업법인을 사업유형별로 분류하면 농업생산(39.9%), 유통판매(21.9%), 가공판매(16.0%), 농업서비스(6.9%)의 순이었다. 전년에 비해 농업생산 및 농업서비스, 기타사업은 소폭 증가한 반면, 가공판매 및 유통판매의 농업법인은 증가 추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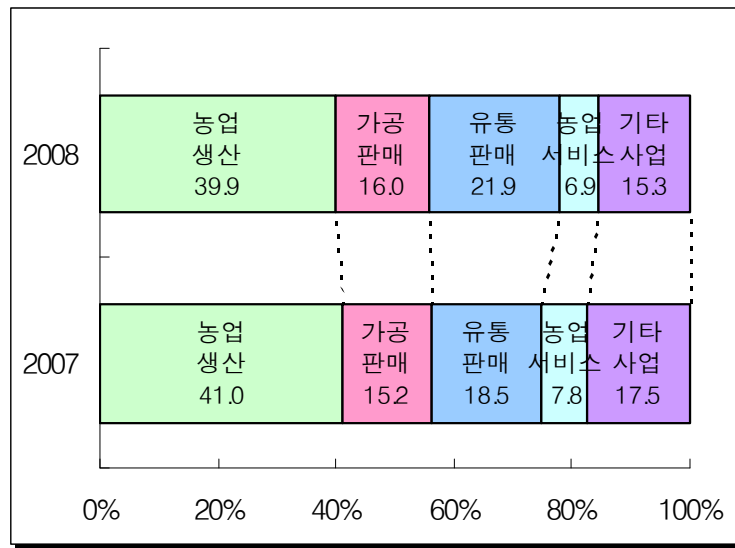
(단위: 개, %)

구 분	계	농업 생산 ¹⁾	농업생산이외				
			소계	가공 판매	유통 판매	농업서비스 ²⁾	기타 사업
2008	4,478 (100.0)	1,787 (39.9)	2,691 (60.1)	715 (16.0)	979 (21.9)	310 (6.9)	687 (15.3)
2007	3,908 (100.0)	1,601 (41.0)	2,307 (59.0)	594 (15.2)	723 (18.5)	305 (7.8)	685 (17.5)
증 감	570	186	384	121	256	5	2
증감률	14.6	11.6	16.6	20.4	35.4	1.6	0.3

주: 1) 농업생산은 작물재배 및 축산이 포함되었음

2) 농업서비스는 영농대행이 포함되었음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그림 3-3> 농업법인 사업유형별 사업체 비중

농업법인의 총 판매액은 5조 7,90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4.1% 증가하였으며, 법인당 판매액은 12억 9천만 원으로 8.3% 증가하였다. 법인유형별로는 유통법인이 2조 256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업생산법인이 1조 6,596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3-9> 농업법인의 판매유형별 판매액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체	판매액계	농업생산수입 ¹⁾	농업생산이외 사업수입					법인당
				소계	가공업	유통업	농업서비스업 ²⁾	기타	
2008	4,478	5,790,086 (100.0)	1,659,623 (28.7)	4,130,463 (71.3)	1,433,993 (24.8)	2,025,633 (35.0)	115,293 (2.0)	555,544 (9.6)	1,293.0 -
2007	3,908	4,665,221 (100.0)	1,266,290 (27.1)	3,398,931 (72.9)	1,322,225 (28.3)	1,475,021 (31.6)	155,191 (3.3)	446,494 (9.6)	1,193.8 -
증 감	570	1,124,865	393,333	731,532	111,768	550,612	-39,898	109,050	99.2
증감률	14.6	24.1	31.1	21.5	8.5	37.3	-25.7	24.4	8.3

주: 1) 농업생산은 작물재배 및 축산이 포함되었음, 2) 농업서비스는 영농대행이 포함되었음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1.3. 농업법인의 경영실태

농업법인의 자산은 14억 6천만 원, 부채는 9억 6천만 원, 자본은 5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각각 3.8%, 2.9%, 5.3% 감소하였다. 농업법인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93.3%로 전년에 비해 4.8% 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전산업(제조업) 부채비율이 129.8%(123.2%)임을 감안할 때 농업법인체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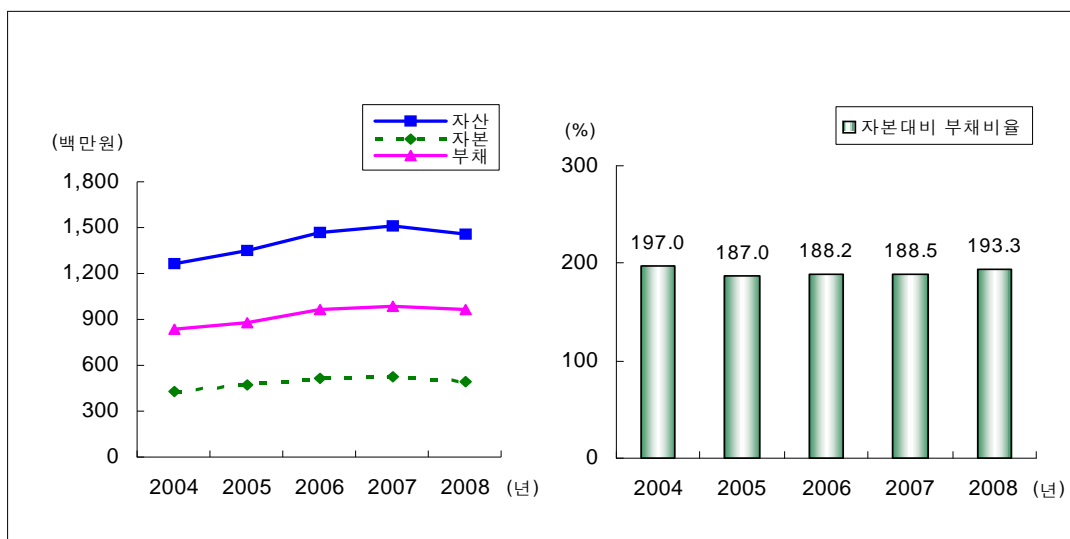
<표 3-10> 농업법인의 자산, 부채 및 자본

(단위: 개, 백만원, %, %p)

구 분	결 산 법인수	자 산			부 채			자 본	자본대비 ¹⁾ 부채비율
		계	유동 자산	고정 자산	계	유동 부채	고정 부채		
2008	3,075	1,455 (100.0)	650 (44.7)	805 (55.3)	959 (65.9)	577 (39.7)	383 (26.3)	496 (34.1)	193.3
2007	2,597	1,513 (100.0)	665 (44.0)	847 (56.0)	988 (65.3)	589 (38.9)	399 (26.4)	524 (34.6)	188.5
증 감	478	-58	-15	-42	-29	-12	-16	-28	4.8
증감률	18.4	-3.8	-2.3	-5.0	-2.9	-2.0	-4.0	-5.3	2.5

주: 1) 자본 대비 부채비율 = (부채/자본)*100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그림 3-4> 농업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추이(2004~2008)

농업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18억 1천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4.7%, 당기순이익은 4천만 원으로 39.3% 증가하였다. 농업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7%에 불과한데, 이는 2008년 전산업(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8.6%(20.4%),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0%(5.9%)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손법인은 897개로 결산법인의 29.2%를 차지하며 전년에 비해 19.6% 증가하였다. 농업법인의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17.1원, 당기순이익은 21.6원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0.9원, 당기순이익은 5.4원 증가한 수준이지만, 2008년 전산업(제조업)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50.0원(58.9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3-11> 농업법인의 경영수지

(단위: 개, 백만원, %)

구 분	결 산 법인수	결 손	매출액	매출 원가	매 출 총이익	영업 이익	경상 이익	당 기 순이익	결손
									제외
2008	3,075 (100.0)	897 (29.2)	1,809	1,566	243	31	42	39	83
2007	2,597 (100.0)	750 (28.9)	1,728	1,488	240	28	32	28	81
증 감	478	147	81	78	3	3	10	11	2
증감률	18.4	19.6	4.7	5.2	1.3	10.7	31.3	39.3	2.5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is).

2.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농업법인 경영분석의 도구로서 수익성·안정성·성장성 지표 등이 있다. 수익성 지표에는 이익율·이윤 등이 이용되며, 총자본 이익율과 매출액(또는 판매액) 순이익율 등이 분석에 이용된다. 안정성 분석은 법인의 재무건전성 평가를 위한 것으로 유동비율 등이 법인의 지불능력 검토를 위해 활용된다. 다음으로 성장성 지표는 법인의 외형적 성장세를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서 매출액 증가율과 더불어 이익

증가율이 성장성 분석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2.1. 수익성 지표

수익성 지표로는 이익율이 대표적이며 이익을 투자자본에 대한 비율로 표시한 총자본 이익율과 판매액에 대한 이익의 비율을 반영하는 판매액 순이익율이 검토된다.⁵⁾ 우선 생산활동에 투입된 총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인 총자본 이익율은 당기순이익을 총자본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농업법인의 법인당 총자본 이익율은 2000년 1.7%에서 2002년 7.0%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2004년에서 2006년까지는 10%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2007년 5.3%, 2008년 7.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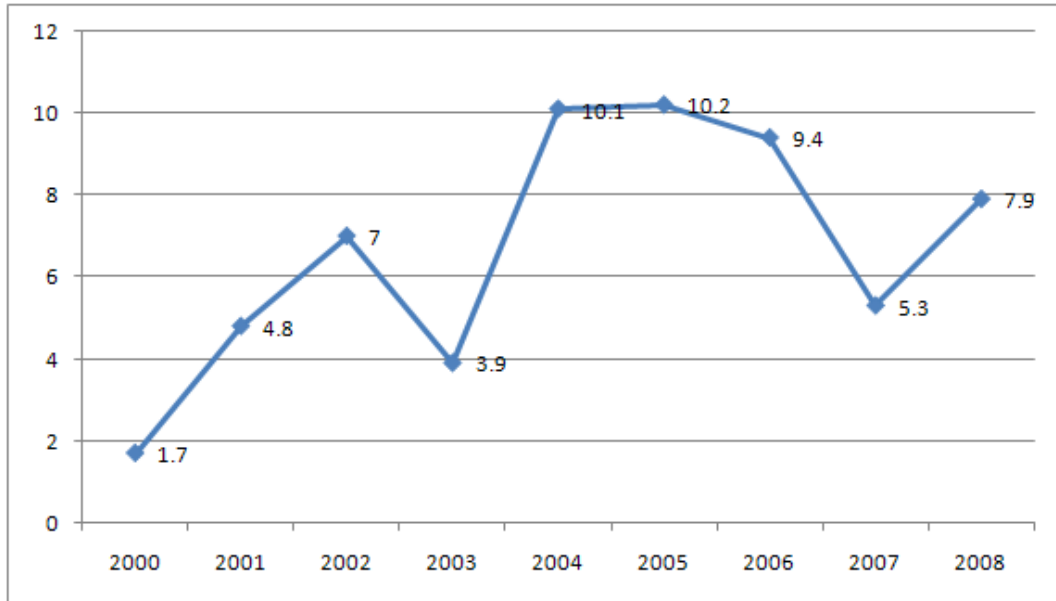
<표 3-12> 농업법인의 총자본 이익률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법인당 당기순이익(백만원)	5	15	25	14	43	48	48	28	39
법인당 총자본(백만원)	287	325	358	359	427	471	510	524	496
법인당 총자본이익율(%) ¹⁾	1.7	4.8	7.0	3.9	10.1	10.2	9.4	5.3	7.9

주 : 1) 총자본이익율 = 당기순이익/총자본*100.

<그림 3-5>는 농업법인의 총자본 이익율을 나타낸 것으로 2000년에서 2005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06년 이후로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법인당 자본투입량에 비해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성활동이 둔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⁵⁾ 이외에도 이윤·부가가치 등이 사용되나, 농업법인경영의 경우 투자자본에 대한 이익율 지표로서 경제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경영진단과 관련한 수익성지표는 이익율지표로 표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이영만, 1999).



<그림 3-5> 농업법인의 총자본 이익율 추이

매출액 순이익율은 법인의 총체적인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과의 양부(良否)를 알 수 있다. 2008년 현재 농업법인의 법인당 매출액 순이익율은 2.2%로 2000년 0.6%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기준에 대한 정확한 표준비율은 없으나 비율이 높을수록, 즉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이 클수록 양호한 상태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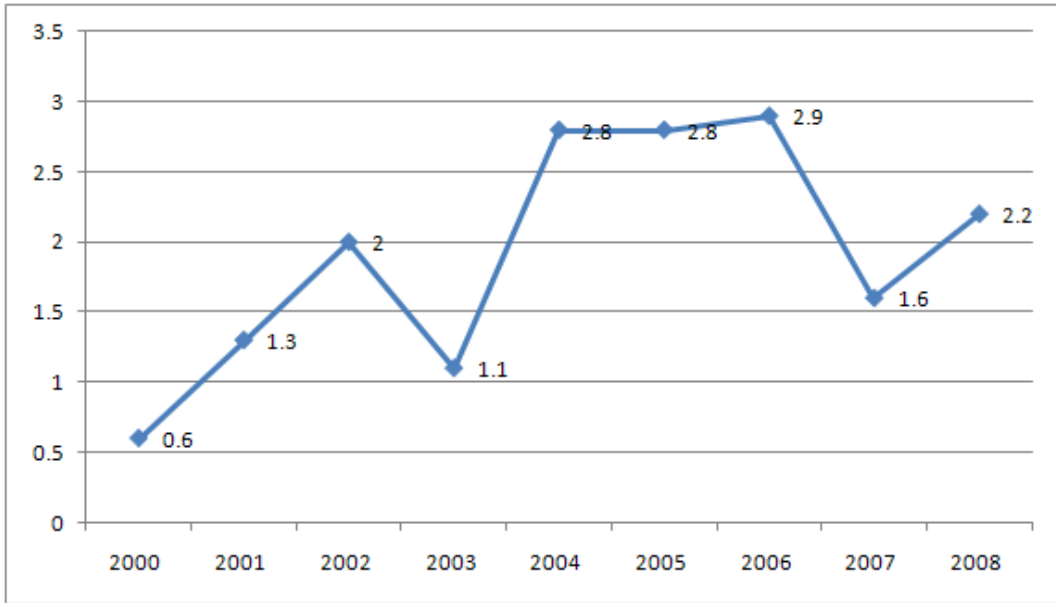
<표 3-13> 농업법인의 매출액 순이익률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법인당 당기순이익(백만원)	5	15	25	14	43	48	48	28	39
법인당 매출액(백만원)	900	1,120	1,236	1,329	1,529	1,709	1,680	1,728	1,809
법인당 매출액순이익율(%) ¹⁾	0.6	1.3	2.0	1.1	2.8	2.8	2.9	1.6	2.2

주 : 1) 매출액순이익율 = 당기순이익/매출액*100.

<그림 3-6>은 농업법인의 매출액 순이익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2000년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이 2008년 전산업의 매출액순이익율 5.0%에 비해 현저히 낮아 농업법인의 수익성 개선이 요구된다.

6) 기업경영분석, kosis.



<그림 3-6> 농업법인의 법인당 매출액순이익

2.2. 안전성 지표⁷⁾

안전성 지표는 법인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재정균형검토와 함께 법인의 지불능력을 검토하기 위한 안전성 지표로 유동자산 구성비·유동부채 구성비, 유동비율이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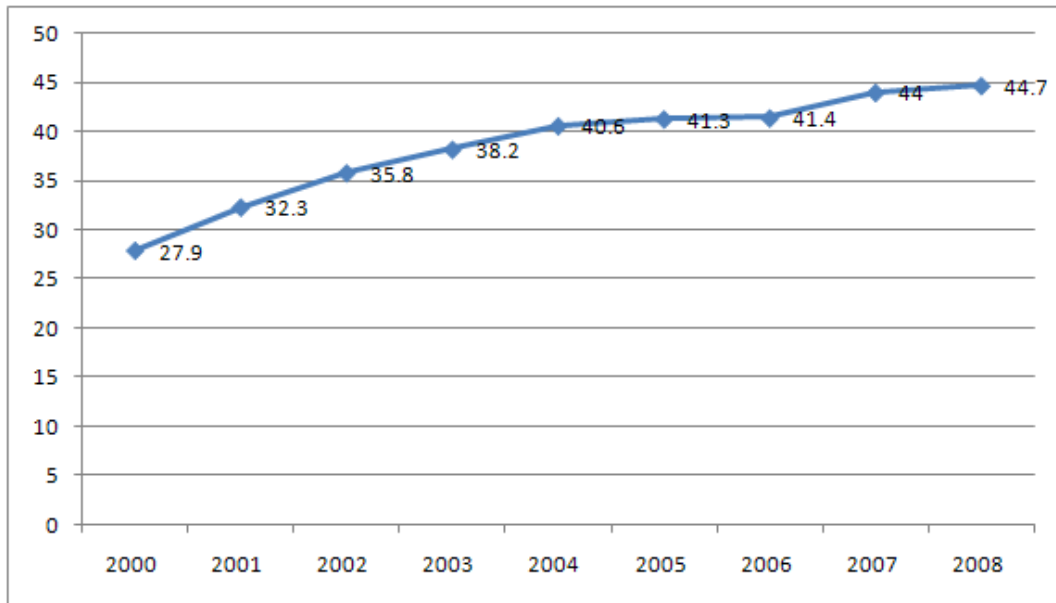
우선 재정균형지표인 유동자산 구성비는 총자산 중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적정수준은 없으나, 고정자산보다 유동자산 비율이 높은 쪽이 자금조달에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연도별 유동자산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유동자산 구성비는 44.7%로 2000년 이후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안전성분석은 농장경영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균형과 지불능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재정균형 측면에서는 대차대조표의 각종 구성비를 파악하는 것으로, 유동자산구성비·고정자산구성비, 유동부채구성비·고정부채구성비·자기자본구성 등이 있다. 지불능력 측면에서는 자산·부채·자본간의 균형상태를 보는 것으로, 유동비율·당좌비율·고정비율·고정장기적합율·자본부채비율 등이 있음(이영만, 1999).

<표 3-14> 농업법인의 유동자산구성비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법인당 유동자산(백만원)	309	370	421	458	515	558	609	665	650
법인당 총자산(백만원)	1,108	1,146	1,177	1,198	1,267	1,352	1,471	1,513	1,455
법인당 유동자산구성비(%) ¹⁾	27.9	32.3	35.8	38.2	40.6	41.3	41.4	44	44.7

주 : 1) 유동자산구성비 = 유동자산/총자산*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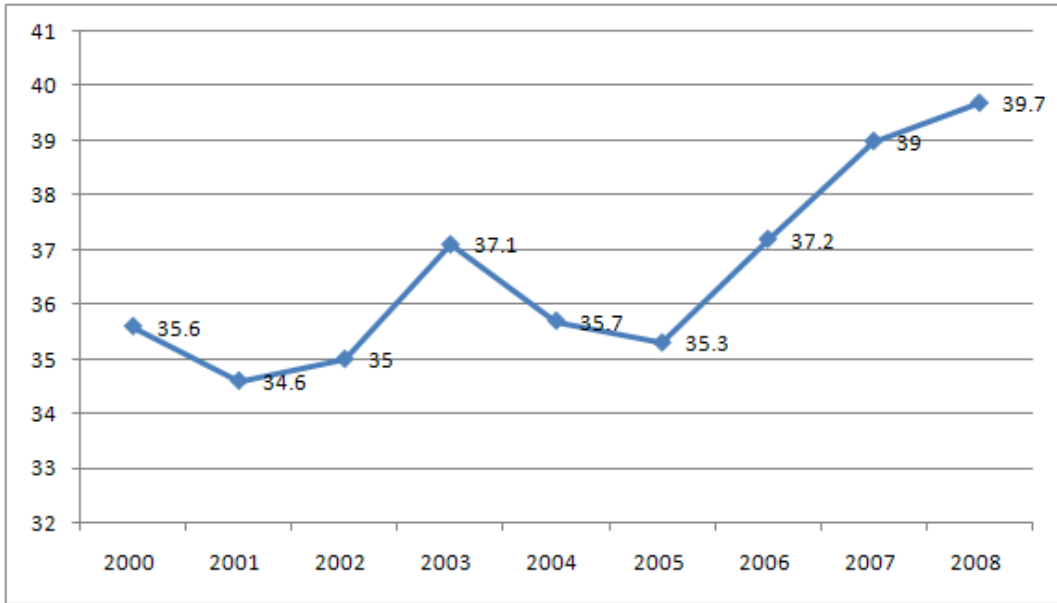
<그림 3-7> 농업법인의 유동자산 구성비 추이

유동자산 구성비와 함께 재정균형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유동부채 구성비이다. 유동부채 구성비는 누적될수록 법인의 자금사정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 2008년 현재 유동부채구성비는 39.7%로 2000년 35.6%, 2001년 34.6%, 2002년 35%, 2003년 37.1%, 2004년 35.7%, 2005년 35.3%, 2006년 37.2%, 2007년 39.0%로 2000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5> 농업법인의 유동부채 구성비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법인당 유동부채(백만원)	395	397	412	445	453	477	547	589	577
법인당 부채·자본합계(백만원)	1,108	1,147	1,177	1,198	1,268	1,352	1,470	1,512	1,455
법인당 유동부채구성비(%) ¹⁾	35.6	34.6	35.0	37.1	35.7	35.3	37.2	39.0	39.7

주 : 1) 유동부채구성비 = 유동부채/부채·자본합계*100.



<그림 3-8> 농업법인의 유동부채 구성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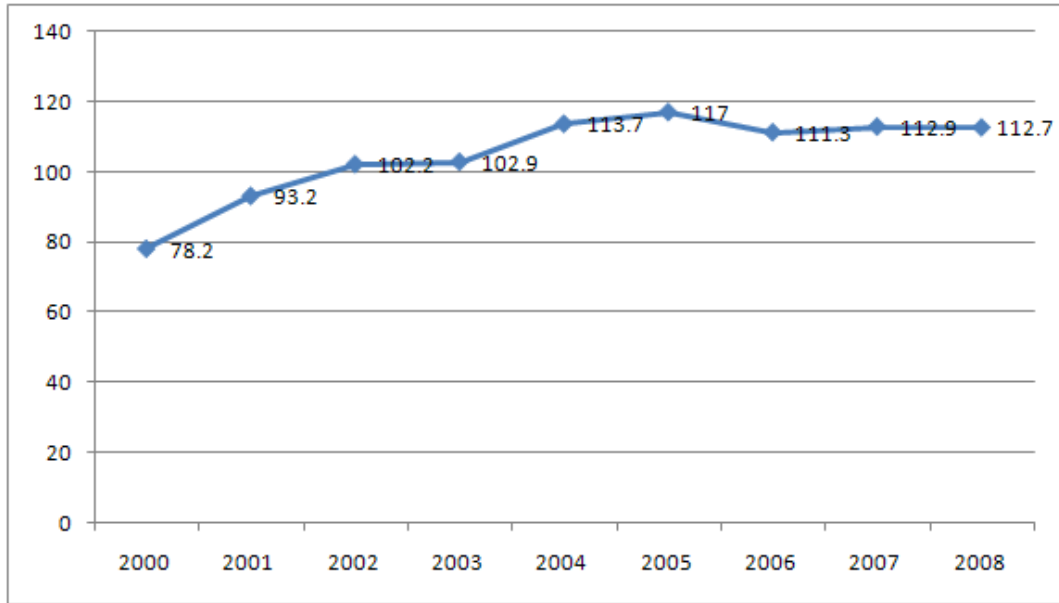
재정균형을 검토하기 위한 유동자산 구성비와 유동부채 구성비 외에 법인의 지불능력을 검토하기 위한 안정성 지표로 유동비율이 대표적이다. 2008년 현재 농업법인의 유동비율은 112.7%로 2000년 유동비율 78.2%에 비해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유동비율 추이는 <그림 3-9>를 통해 나타낼 수 있으며 소폭 상승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의 유동성이 건전한 상태로 판단되는 유동비율 200%이상, 즉 유동자산이 유동부채의 2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 유동비율의 건전성 판단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법인의 부채유동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표 3-16> 농업법인의 법인당 유동비율 추이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법인당 유동자산(백만원)	309	370	421	458	515	558	609	665	650
법인당 유동부채(백만원)	395	397	412	445	453	477	547	589	577
법인당 유동비율(%) ¹⁾	78.2	93.2	102.2	102.9	113.7	117.0	111.3	112.9	112.7

주 : 1)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그림 3-9> 농업법인의 유동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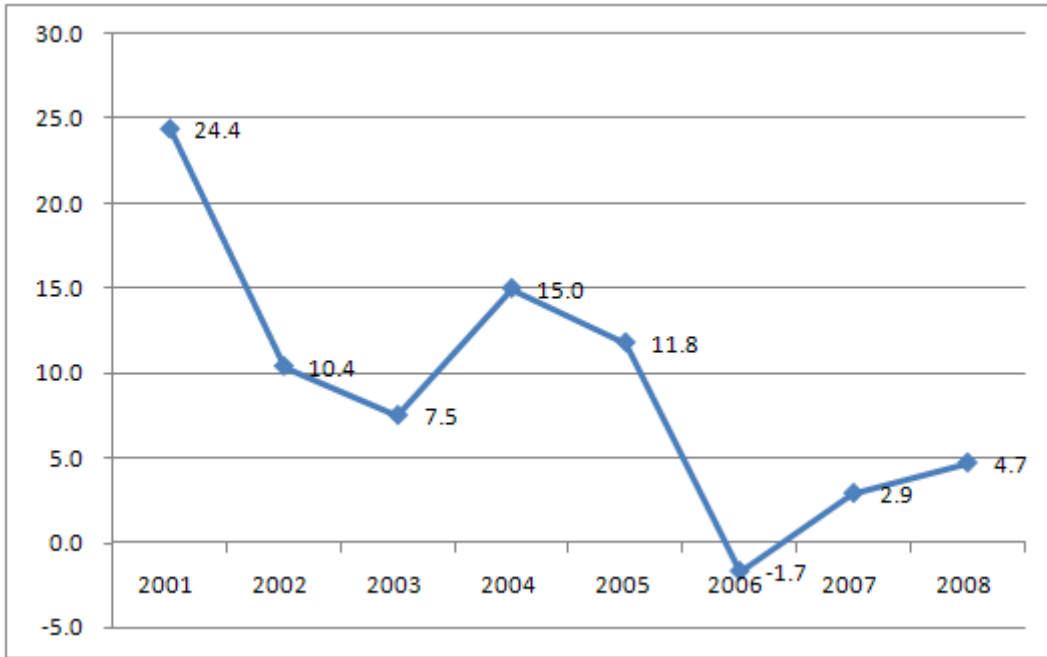
2.3. 성장성 지표

기업의 외형적 성장세를 파악할 수 있는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과 이익 증가율이 있으며 이 중 이익증가율은 성장성 분석의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우선 2008년 현재 농업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은 2001년 24.2%에서 2008년 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법인의 외형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0>은 매출액 증가율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농업법인의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7> 농업법인의 매출액 증가율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증가율(%) ¹⁾	24.4	10.4	7.5	15.0	11.8	-1.7	2.9	4.7

주 : 1) 매출액 증가율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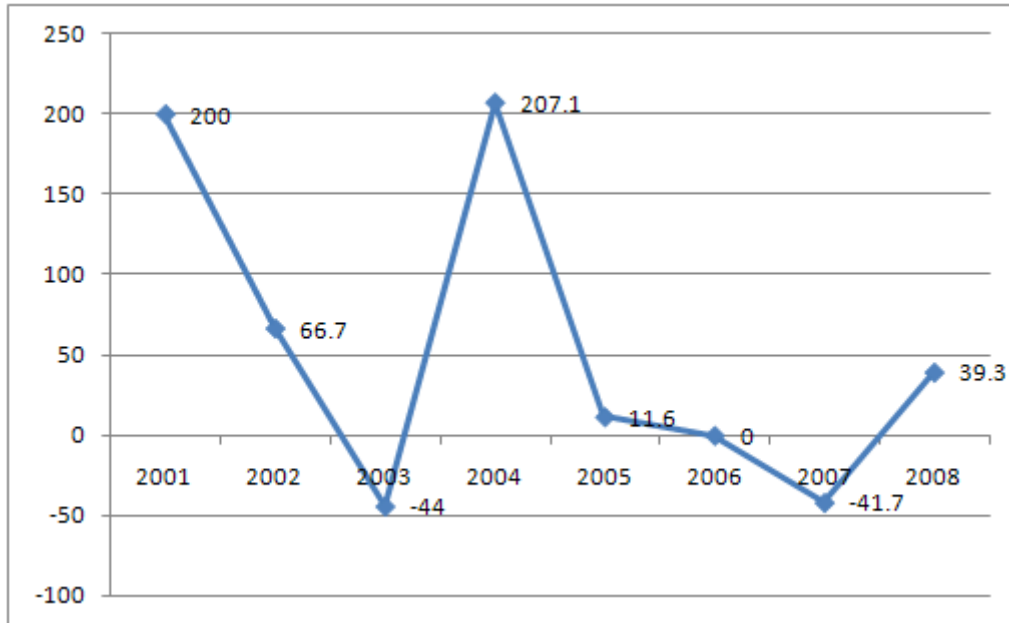
<그림 3-10> 농업법인의 매출액 증가율 추이

농업법인의 이익 증가율 또한 2001년 200%에서 2008년에는 이익 증가율이 39.3%로 하락해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대표적인 성장성 지표인 이익 증가율과 함께 매출액 증가율 또한 감소하고 있어 외형적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1>은 농업법인의 이익 증가율 추이를 도식화한 것으로 그 하락률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3-18> 농업법인의 이익 증가율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이익증가율(%) ¹⁾	200	66.7	-44	207.1	11.6	0	-41.7	39.3

주 : 1) 이익증가율 =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전기순이익*100.



<그림 3-11> 농업법인의 이익 증가율 추이

제4장

농업법인 유형별 효율성 분석

1. 효율성 분석모형

1.1. 효율성 개념

효율성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농업법인의 생산과정에서의 효율성이란 다분히 기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투입물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투입요소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다투입-다산출 법인의 효율성은 대개 투입요소간의 적절한 결합과 사용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투입물간의 결합이나 투입물의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문제는 생산과정에서 일정한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입물의 수준과 투입물간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효율성(생산성)의 개념은 투입물에 대한 산출물의 비율로 정의된다. DEA에 있어서 효율성에 대한 정의는 Charnes and Cooper(1985)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의사결정단위(DMU)의 산출물은 투입요소의 일부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산출물의 다른 일부를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증가될 수 없다.

② DMU의 투입물은 산출물의 일부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투입요소의 다른 일부를 증가시키지 않고서는 감소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비효율성은 투입물을 이용하여 산출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투입물간의 결합이나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투입물의 비효율성(input inefficiency)과 산출물의 비효율성(output inefficiency)으로 나눌 수 있다.

1.1.1. 투입물의 효율성 : 기술효율성과 배분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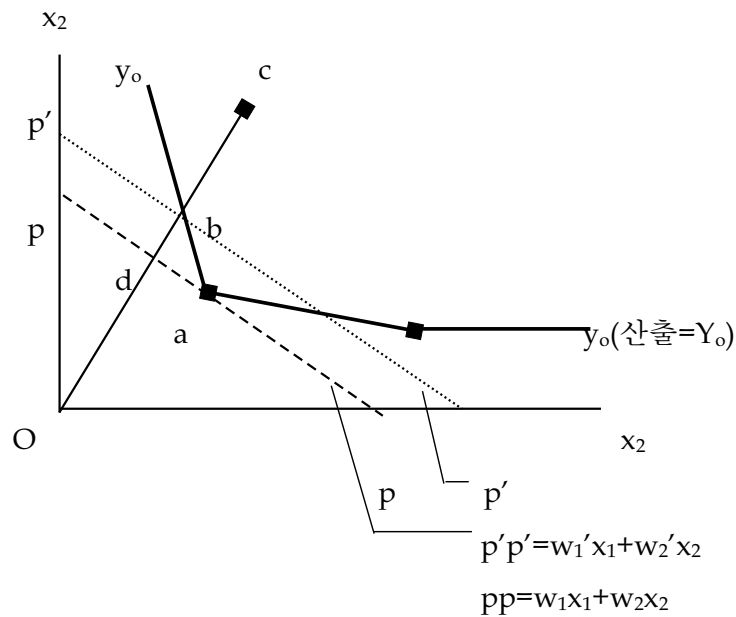
투입물의 비효율성은 주어진 산출물 수준을 생산하는데 있어 농업법인은 투입물을 최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으로서, 이렇게 준최적 수준에서 투입물을 부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투입물의 비효율성은 기술 비효율성과 배분 비효율성으로 나눌 수 있다.

기술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은 주어진 산출수준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투입요소보다 더 많은 양의 투입물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며, 배분 비효율성(allocative inefficiency)은 투입물간의 결합이 준최적 배율에서 결합될 때 발생하는 것이다. 투입요소 측면과 비용극소화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두가지 비효율성의 합을 비용의 비효율성 또는 전체 비효율성이라고 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두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이처럼 비효율성이 서로 다른 경우에 의해서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4-1>과 같이 두가지의 투입요소(x_1, x_2)를 서로 다른 수준에서 사용하여 동일한 수준의 산출물(Y_0)을 생산하는 a, b, c, d의 비교를 통해 투입요소의 비효율성을 살펴본다. 이때 농업법인의 생산함수 $y=f(x_1, x_2)$ 는 규모의 보수불변상태를 가정한다.

y_0, y_0 선분은 Y_0 단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법인으로 투입요소의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한 선형 등생산물곡선(linear isoquant line)을 나타내며, pp는 주어진 투입요소 가격(w_1, w_2)하에서의 등비용선(isocost line)을 나타낸다. 여기서 비용최소화 행동에 따라 투입요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a법인과 이와 동일한 산출수준을 생산하면서도 더 많은 투입요소를 사용하는 c법인을 비교해봄으로써 투입요소의 비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

원점에서 c점을 이은 Oc 선은 c법인의 투입비율을 나타내며 여기서 기술적 비효율성은 c법인이 a법인과 동일한 양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입수준보다 더 많은 투입요소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그림 4-1> 투입물의 효율성



그림에서 Oc선분을 따라 c법인이 b점으로 이동하면 처음 산출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투입수준을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이는 c법인이 a법인에 비해 더 많은 투입요소를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적 비효율성은 bc가 되며 기술효율성을 비율로써 나타내면 Ob/Oc가 된다.

배분 비효율성은 Oc선이 최적법인인 a를 통과하지 않아 투입요소간의 결합비율이 최적상태가 아닌 준최적 비율에서 생산이 이루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즉 그림에서 보면 b점과 a점은 기술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c법인이 b점에서 생산하려면 원래의 등비용선(pp)보다 더 많은 비용(p'p')을 지불해야 하므로 배분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배분 비효율성은 bd가 되며 따라서 배분효율성을 비율로써 나타내면 Od/Ob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 비효율성과 배분 비효율성을 합친 투입요소의 비효율성(전체 비효율성)은 dc가 되며 기술 효율성을 그림에서 보면 Od/Oc가 된다. 따라서 투입요소의 효율성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text{투입물 효율성}(Od/Oc) = \text{기술효율성}(Ob/Oc) \cdot \text{배분효율성}(Od/Ob)$$

1.1.2. 산출물의 효율성 : 순수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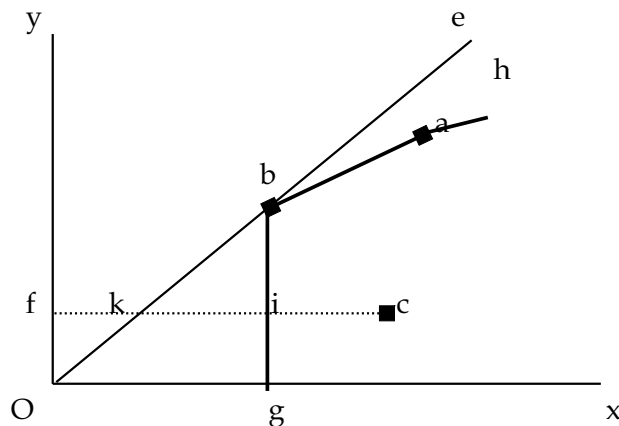
산출물의 비효율성은 생산과정에 있어서 최소한의 단위비용에 일치하는 산출물의

결합 및 수준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효율성인데 산출물의 비효율성은 투입요소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순수기술 비효율성(pure technical inefficiency)과 현재의 산출수준이 규모수익불변에서 결정되지 않고 규모수익증가 혹은 감소에서 균형이 이루어질 때 발생하는 규모 비효율성(scale inefficiency)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때 규모의 경제 또는 비경제가 존재하는 산출물 수준과 규모의 보수불변에서 결정되는 최적산출물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규모 비효율성을 설명할 수 있다.

산출물의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해 <그림 4-2>와 같이 단일 투입물(x)을 가지고 단일 산출물(y)을 생산하는 a, b, c 법인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한다. 그림에서 Oe선은 규모의 보수불변 상태에서의 생산경계를 나타내는데, 이 선은 주어진 투입수준에서의 최적 산출수준을 의미한다.

법인 c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DEA에서의 기술 비효율성을 순수기술 비효율성과 규모 비효율성으로 분리하여 살펴본다. 먼저 법인 c의 기술적 비효율성은 최적생산규모(Most Productive Scale Size)인 k점과 c를 비교함으로써 측정될 수 있는데, 기술적 비효율성은 kc가 되며 따라서 기술효율성을 비율로 나타내면 fk/fc 이고 이는 투입물의 효율성 관점에서 본 Ob/Oc 와 일치한다. 즉 산출 f수준에서 규모의 보수불변상태의 최적 소비량을 초과하는 kc만큼이 비효율적인 초과 투입량이며 이를 기술효율성 비율로 나타낸 것이 fk/fc 이다.

<그림 4-2> 산출물의 효율성



순수기술적 비효율성은 산출수준이 법인 c와 동일하면서 생산프론티어상에 위치하는 j점을 비교함으로써 측정가능한데 그 값은 jc 이며 기술효율성을 나타내는 비율은 fj/fc 이다. 그리고 생산프론티어와 최적 생산규모간의 차이(kj)만큼이 규모의 비효

효율값이 되며 규모효율성을 비율로 나타내면 f_k/f_j 가 된다. 그러므로 위의 세가지 효율성간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text{기술효율성}(f_k/f_c) = \text{순수기술효율성}(f_j/f_c) \cdot \text{규모효율성}(f_k/f_j)$$

1.2. DEA 모형의 개념

비모수적 효율성 측정방법 중에서 DEA는 통계학적으로 회귀분석법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parameter)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형계획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집합에 적용되는 몇 가지의 공준을 가지고 평가대상의 경험적인 투입요소와 산출물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 효율적 프론티어를 도출한 후 평가대상들이 효율성 프론티어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여부로써 비효율성을 측정한다. 이 방법은 다양한 산출물과 여러 가지 투입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대적 효율성 값을 도출하며 그 과정에서 각각의 산출물 또는 투입요소에 대해 미리 결정된(a priori) 가중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비효율성이 어느 부문에서 발생하며 그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에 대한 수치적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경영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EA는 투입과 산출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비영리적이며 공적인 의사결정단위(Decision Making Unit : DMU)들의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으로서, 여러 종류의 산출을 생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투입요소를 사용하는 조직들의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선형계획기법(Linear Programming Technique)이다. 이 방법은 DMU들로부터 산출과 투입을 상호비교함으로써 생산성을 측정하고, 측정대상이 되는 DMU를 다른 DMU들과 비교하여 상대적 개념에서의 비효율성을 나타내준다.

모수적 접근방법이 자료들을 평균에 회귀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 DEA는 자료들을 모두 포락하는 선형초평면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자료들의 점을 찍었을 때 평균에 가까운 자료보다는 변경에 위치하는 자료들이 더 중요하다. 또한, 모수적 분석 방법은 정태적 분석 및 산업전체의 분석에 주로 이용하였는데, DEA는 한 시기의 특정산업의 생산단위 개개에 대한 생산경계를 추정하는데 주로 이용한다. 즉, 농업법인 전체의 생산경계를 구한다기보다는 법인 개개의 생산경계를 구한 다음 이의 차례를 매기는 작업에 주로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차례라는 것은 같은 투입을 가지고 어떤 법인이 좀더 많은 생산을 하는가 혹은 동일한 생산을

누가 더 적은 투입으로 달성하는가 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평가대상이 되는 단위를 의사결정단위(DMU)라고 부르는데, 각 DMU는 여러 가지 투입요소를 사용하여 다양한 산출물을 생산하는 책임중심점으로서 병원, 학교, 법원, 군부대,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DMU의 선정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각 DMU 간에는 그 성격이 유사하여야 하고,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통제할 수 있는 경제주체이어야 하며, 평가 대상이 되는 DMU의 수는 추정된 효율성 값이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한다.

비율분석법이나 지수법은 보통 여러 가지 비율 혹은 지수 중 몇가지는 유리하게 나타나고 몇가지는 불리하게 나타날 경우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율분석법에서 선택되는 비율들, 지수화시키는데 사용되는 가중치의 선택 등이 상당히 주관적이다.

특정한 비용함수를 가정하고 회귀분석법에 의해 구체적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비용함수를 이용한 효율성분석과 달리 함수형태를 사전에 가정하지 않고 단순한 정규조건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생산가능집합(production possibility set)만을 가정하여 직접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비율분석법이나 모수적 추정기법에 비해 DEA기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DEA기법은 다수의 투입과 산출이 존재하나 이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의 지수로 종합화하기 힘든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특히, 투입 및 산출요소들의 측정단위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적용가능하고 화폐단위로 표시 불가능하거나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원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둘째, DEA에서는 평가대상 조직의 투입과 산출관계가 유사한 다른 효율적인 조직들이 먼저 선정되고 이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상대평가를 한다.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조직의 경우에는 실현가능한 목표치의 설정이 가능하게 되고 비효율성의 정도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효율성의 원인이 순수기술적인 것인지, 아니면 규모에 의한 것인지를 밝힐 수 있으며 각 DMU의 규모수익에 대한 특성을 알 수 있다.

셋째, DEA에서는 평가대상조직의 효율성을 최대로 하는 투입과 산출에 대한 가중치를 직접 추정하기 때문에 비율분석 등과 같이 경영평가를 위한 항목별 가중치를 사전에 주관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측정단위가 상이한 여러 가지의 투입요소와 산출물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들 측정단위가 상이한 여러 산출물 및 투입요소가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는 다른 측정방법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넷째, 구체적 생산함수에 관한 정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효율적인 투입, 산출 관계를 알 필요가 없다. 따라서 DEA는 비영리적이며 공적인 부문을 평가하는데

유용한데, 이들 조직의 산출은 시장경제에 의해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산출에 필요한 투입량의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종래 특정한 비용함수를 가정하고 회귀분석법에 의해 구체적 비용함수를 추정하는 효율성 분석과는 달리, 특정한 함수형태를 사전에 가정하지 않고 단순한 정규분포에 의해 규정되는 생산가능집합만을 가정하여 직접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이 많은 장점을 가진 반면 몇가지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첫째, 다른 평가방법들과 마찬가지로 투입과 산출이 명확히 측정가능하여야 하며, 자료간의 동질성이 특히 중요하게 요구된다.

둘째, DEA모형은 분석대상의 내재적인 비효율성을 밝혀내지 못한다. 모든 분석대상이 동일한 비효율성을 가진다면 이 방법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다.

셋째,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연구없이 상대적으로 단순한 모형을 사용할 가능성인데 이는 투입, 산출물의 정의를 내릴 때 발생가능한 오류이다.

넷째, DEA에서는 경영실수 또는 행운 등이 인정되지 않고 모든 변동은 비효율성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잔차항이 비효율성으로만 구성된다. 이렇게 될 경우 프론티어상에 있는 기업의 경영실수나 행운에 의한 영향이 다른 모든 기업에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⁸⁾

1.3. DEA 분석모형

DEA측정기법은 우선 일련의 선형계획모형을 각 의사결정단위의 투입, 산출물에 적용하여 최선의 의사결정단위를 선별해내고 이 최선의 의사결정단위들로부터 효율적 프론티어를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프론티어가 구성되면 각 의사결정단위들이 이 프론티어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하는 거리를 계산하여 상대적 효율성을 측정하게 된다.

먼저 $N(n=1,2,\dots,N)$ 개의 평가대상 법인이 있고, 각각의 농업법인은 다른 양의 $I(i=1,2,\dots,I)$ 개의 요소들을 투입하여 $J(j=1,2,\dots,J)$ 개의 산출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모든 투입과 산출은 비음임을 가정하고 모든 법인은 하나 이상의 양의 값을 갖는 투입과 산출을 가져야 한다고 가정한다. 이 때 투입대 산출의 비율이 바로 효율성을 재는 지수가 되며 이 비율은 극대화 문제의 목적함수가 된다. 그리고 제약식들을 각각의 법인의 효율성 지수가 1이하가 되도록 목적함수를 제약한

⁸⁾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DEA에서는 평가대상들이 효율적 프론티어상의 기업을 기준으로 상대적 효율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

$$\text{Max}_{u,v} \varepsilon = \frac{\sum u_j Y_{nj}}{\sum v_i X_{ni}}$$

$$\text{S.T} \quad \frac{\sum u_j Y_{nj}}{\sum v_i X_{ni}} \leq 1$$

$$u_j, v_i \geq 0$$

(u_j : 산출물 j 의 계수(가중치)

v_i : 투입물 i 의 계수(가중치)

Y_{nj} : 평가대상 n 에 의해 생성된 j 번째 산출물의 값

X_{ni} : 평가대상 n 에 의해 투입된 i 번째 투입물의 값)

목적함수의 최대값은 특정 DMU와 DEA의 효율성 값이 된다. 제약조건식은 투입과 산출에 대한 동일한 계수 u, v 가 모든 평가단위에 적용될 때, 어떠한 효율성도 1(100%)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위 식은 비선형 수리계획법으로 계산하기 매우 어려워 Charnes와 Cooper에 의해 수학적 변환을 통해 일반 선형계획법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변환된 식의 쌍대 문제가 바로 다음과 같은 기술적 효율성을 구하는 선형계획법이다.

$$\text{Min} \quad \alpha_o$$

$$\text{S.T} \quad \sum_{n=1}^N \lambda_n \cdot Y_{nj} \geq Y_{oj} \quad j=1,2,\dots,J,$$

$$\sum_{n=1}^N \lambda_n \cdot X_{ni} \leq \alpha_{oi} \cdot X_{oi} \quad i=1,2,\dots,I,$$

$$\lambda_n \geq 0, \quad n=1,2,\dots,N$$

여기에서 Y_{nj} 는 n 번째 DMU의 $j(j=1,2,\dots,J)$ 번째 산출물을 의미하며, X_{ni} 는 n 번째 DMU의 $i(i=1,2,\dots,I)$ 번째 투입물을, 그리고 λ_n 은 n 번째 DMU가 프런티어구성에 얼마만큼 작용을 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가중치 변수(intensity variable)이다. 선형계획모형에서 얻은 최적값인 α_o^* 는 0보다 크고 1과 같든지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되며, n 번째 DMU가 프런티어상의 농업법인군에 비해서 같은 양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투입물을 더 사용하였는가를 가리키는 척도가 된다.

기술효율성을 순수기술효율성과 규모효율성으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형계획문제를 추가로 해결하여야 한다.

$$\begin{aligned}
 & \text{Min } \beta_o \\
 & \text{S.T } \sum_{n=1}^N \lambda_n \cdot Y_{nj} \geq Y_{oj} \quad j=1,2,\dots,J, \\
 & \quad \sum_{n=1}^N \lambda_n \cdot X_{ni} \leq \beta_{oi} \cdot X_{oi} \quad i=1,2,\dots,I, \\
 & \quad \lambda_n \geq 0, \quad n=1,2,\dots,N \\
 & \quad \sum_{n=1}^N \lambda_n = 1
 \end{aligned}$$

$\sum \lambda_n = 1$ 이라는 제약 조건을 도입하여 규모의 보수 불변이라는 가정을 배제하고, 규모의 보수 증가·불변·감소 상태(Variable Returns to Scale)를 모두 포괄했다. 순수기술효율성은 선형계획모형에서 얻은 β_o^* 로 측정되고,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 : SE)은 α_o^* 와 β_o^* 의 비율로써 나타낼 수 있다. 즉, 규모효율성은 규모의 보수불변을 가정한 상태의 선형계획모형과 그 가정을 배제한 상태의 선형계획모형의 차이에 기인하며, 그 값은 $SE = \alpha_o^* / \beta_o^*$ 가 된다. 만일 SE가 1이면 규모의 비효율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술효율성은 순수기술효율성과 같게 되고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을 보인다(Constant Returns to Scale).

만약 SE가 1보다 작으면, 즉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규모의 보수 증가나 체감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규모의 보수 증가, 체감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형계획문제의 해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begin{aligned}
 & \text{Min } \gamma_o \\
 & \text{S.T } \sum_{n=1}^N \lambda_n \cdot Y_{nj} \geq Y_{oj} \quad j=1,2,\dots,J, \\
 & \quad \sum_{n=1}^N \lambda_n \cdot X_{ni} \leq \gamma_{oi} \cdot X_{oi} \quad i=1,2,\dots,I, \\
 & \quad \lambda_n \geq 0, \quad n=1,2,\dots,N \\
 & \quad \sum_{n=1}^N \lambda_n \leq 1
 \end{aligned}$$

$\sum \lambda_n \leq 1$ 라는 제약식의 의미는 규모의 보수가 감소하거나 불변인 상태

(Non-Increasing Returns to Scale)를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SE가 1보다 작고 β_0^* 가 γ_0^* 와 같으면 규모의 비효율성이 존재하며, n번째 DMU는 규모에 대한 수확 체감을 보이게 된다(Decreasing Returns to Scale). 만약 SE가 1보다 작고 β_0^* 가 γ_0^* 보다 크면 규모의 비효율성이 역시 존재하며, n번째 DMU는 규모에 대한 수확증가를 보이게 된다(Increasing Returns to Scale).

따라서 선형계획문제에서 얻은 일련의 최적값들을 비교함으로써 개별분석 대상의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각 분석대상의 생산기술이 규모에 대해 일정, 증가 또는 체감수확을 보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2. 효율성 분석결과

2.1. 농업생산유형 법인의 효율성 분석

2.1.1. 효율성 분석 값

효율성 분석을 위해 농업생산법인 726개를 대상으로 매출액과 투입비용, 직원수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추정을 위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수를 투입 자료로 사용하였다. 산출 자료는 농업생산법인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업생산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16억 원이며, 최소 매출액은 1백만 원인 반면, 최대 매출액은 434억 원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은 평균 매출원가가 14억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178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생산법인의 평균 직원 수는 13.3명으로 나타났다.

<표 4-1> 농업생산법인의 투입·산출 자료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산출 변수	매출액	1,588.0	3,106.2	1	43,386
	매출원가	1,388.8	2,708.1	0	34,696
투입 변수	판매비와 관리비	177.6	429.0	0	7,465
	직원 수	13.3	20.6	1	363

농업생산법인을 대상으로 DEA모형에 의해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순수기술 효율성의 값을 추정하였다. 농업생산법인의 효율성 값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표 4-2).

기술효율성은 0.61로 추정되었으며,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분리해보면 규모효율성이 0.92로 계산된 반면 순수기술효율성은 0.67로 추정되었다. 규모효율성이 1이하란 의미는 결국 규모의 수익 증가나 수익 감소의 상태에 농업생산법인이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표 4-2> 농업생산법인의 효율성 분석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술효율성	726	0.610	0.187	0.007	1.000
규모효율성	726	0.917	0.155	0.052	1.000
순수기술효율성	726	0.669	0.188	0.053	1.000

농업생산법인의 효율성 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726개 농업생산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23개(3.58%),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72개(9.92%),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94개(12.95%)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효율성 값이 1미만인 비효율적인 농업생산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703개(96.42%),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654개(90.08%),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632개(87.05%)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농업생산법인이 비효율적인 운영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 농업생산법인의 기술효율성 분포

구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비효율적	0.5미만	194	26.72	132	18.18	27	3.72
	0.5~0.6	139	19.15	134	18.46	6	0.83
	0.6~0.7	163	22.45	160	22.04	24	3.31
	0.7~0.8	140	19.28	137	18.87	28	3.86
	0.8~0.9	41	5.65	64	8.82	70	9.64
	0.9~1.0	26	3.58	27	3.72	477	65.70
효율적	1	23	3.17	72	9.92	94	12.95
합계		726	100.00	726	100	726	100

2.1.2. 규모의 경제성 분석

농업생산법인의 규모의 경제성 분석은 DEA모형 중의 하나인 기술효율성 모형의 람다 값(λ)⁹⁾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농업생산법인의 규모수익을 살펴보면, 현재 농업생산법인의 상태가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인 법인은 458개(63.1%),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인 법인은 104개(14.3%),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법인은 164개(22.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 상태에 있는 농업생산법인은 투입량 증가에 대해 산출물의 증가비율이 더 크므로 산출물의 증가에 노력하는 것이 기술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현재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농업생산법인은 투입요소 증가에 대해 산출물의 증가비율이 훨씬 작으므로 투입요소의 감소에 노력하는 것이 기술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9) 람다 값(λ)을 이용하여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 : Increasing Returns to Scale),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 : Constant Returns to Scale),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 : Decreasing Returns to Scale)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농업생산법인의 기술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제시가 가능하다.

<표 4-4> 농업생산법인의 규모수익

(단위 : 개, %)

구 분	IRS	CRS	DRS	합계
법인 수	458	104	164	726
비율	63.09	14.33	22.58	100.00

2.1.3. 경영효율 개선방안

농업생산법인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농업생산법인의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¹⁰⁾ 효율성을 분석한 726개 농업생산법인 중 특정 법인의 사례를 통해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별 측정된 변수 값과 효율적 가상지점 변수 값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법인의 투입요소 중 매출원가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3,321백만 원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2,826.8백만 원으로 매출원가에서 494.2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요소 중 판매비와 관리비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189백만 원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160.9백만 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28.1백만 원이 과잉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입요소 중 직원수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7명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6명으로 직원수에서 1명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¹⁰⁾ 실증 분석을 통해 각 투입 및 산출요소별 측정된 변수 값과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이 제시 되며, 제시된 투입 및 산출요소별 측정 변수 값은 농업생산법인이 실현 하고 있는 현상치를 의미하며,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은 농업생산법인이 주어진 투입요소를 가지고 추구할 수 있거나 경영효율성을 누리기 위한 목표치를 의미한다.

<표 4-5> 농업생산법인의 경영효율 개선안

기술효율성 값		0.851(DRS)	
준거지점	10(0.033), 19(0.102), 74(0.370), 202(0.494)		
	측정값	효율적 값	개선량
매출액(백만원)	3,589	3,589	0
매출원가(백만원)	3,321	2,826.80	494.20
판매비(백만원)	189	160.88	28.12
직원수(명)	7	5.96	1.04

2.2. 농업가공법인의 효율성 분석

2.2.1. 효율성 분석 값

효율성 분석을 위해 농업가공법인 484개를 대상으로 매출액과 투입비용, 직원 수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추정을 위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수를 투입 자료로 사용하였다. 산출 자료는 농업가공법인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업가공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27억 원이며, 최소 매출액은 1백만 원인 반면, 최대 매출액은 478억 원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은 평균 매출원가가 25억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207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농업가공법인의 평균 직원 수는 10.3명으로 나타났다.

<표 4-6> 농업가공법인의 투입·산출 자료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산출 변수	매출액	2,711.1	5,355.5	1	47,758
	매출원가	2,463.8	5,016.0	1	44,267
투입 변수	판매비와 관리비	207.2	512.1	0	7,260
	직원수	10.3	11.7	1	100

농업가공법인을 대상으로 DEA모형에 의해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순수기술 효율성의 값을 추정하였다. 농업가공 법인의 효율성 값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표

4-7).

기술효율성은 0.79로 추정되었으며,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분리해보면 규모효율성이 0.94로 계산된 반면 순수기술효율성은 0.84로 추정되었다. 규모효율성이 1이하란 의미는 결국 규모의 수익증가나 수익감소의 상태에 농업가공법인이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표 4-7> 농업가공법인의 효율성 분석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술효율성	484	0.793	0.177	0.037	1.000
규모효율성	484	0.942	0.132	0.037	1.000
순수기술효율성	484	0.842	0.152	0.215	1.000

농업가공법인의 효율성 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484개 농업가공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19개(3.93%),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69개(14.26%),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57개(11.78%)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효율성 값이 1미만인 비효율적인 농업가공법인 수는 기술효율성 모형에서는 465개(96.07%),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415개(85.74%),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427개(88.22%)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농업가공법인이 비효율적인 운영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농업가공법인의 기술효율성 분포

구 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비효율적	0.5이하	35	7.23	18	3.72	14	2.89
	0.5~0.6	20	4.13	16	3.31	5	1.03
	0.6~0.7	44	9.09	32	6.61	6	1.24
	0.7~0.8	96	19.83	76	15.70	4	0.83
	0.8~0.9	147	30.37	137	28.31	32	6.61
	0.9~1.0	123	25.41	136	28.10	366	75.62
효율적	1	19	3.93	69	14.26	57	11.78
합계		484	100	484	100	484	100

2.2.2. 규모의 경제성 분석

농업가공법인의 규모의 경제성 분석은 DEA모형 중의 하나인 기술효율성 모형의

람다 값(λ)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농업가공법인의 규모수익을 살펴보면, 현재 농업가공법인의 상태가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인 법인은 224개(46.3%),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인 법인은 61(12.6%),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법인은 199개(41.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 상태에 있는 농업가공법인은 투입량 증가에 대해 산출물의 증가비율이 더 크므로 산출물의 증가에 노력하는 것이 기술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현재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농업가공 법인은 투입요소 증가에 대해 산출물의 증가비율이 훨씬 작으므로 투입요소의 감소에 노력하는 것이 기술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4-9> 농업가공법인의 규모수익

(단위 : 개, %)

	IRS	CRS	DRS	합계
법인 수	224	61	199	484
비율	46.28	12.60	41.12	100.00

2.2.3. 경영효율 개선방안

농업가공법인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농업가공법인의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효율성을 분석한 484개 농업가공법인 중 특정 법인의 사례를 통해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별 측정된 변수 값과 효율적 가상지점 변수 값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법인의 투입요소 중 매출원가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677백만 원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582.4백만 원명으로 매출원가에서 94.7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요소 중 판매비와 관리비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19백만 원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16.3백만 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2.7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입요소 중 직원수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7명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6명으로 직원수에서 1명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농업가공법인의 경영효율 개선안

기술효율성 값		0.860(DRS)		
준거지점	159(0.246), 192(0.004), 335(0.521), 250(0.229)			
	측정값	효율적 값	개선량	
매출액(백만원)	760	760	0	
매출원가(백만원)	677	582.35	94.65	
판매비(백만원)	19	16.34	2.66	
직원수(명)	7	6.02	0.98	

2.3.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 분석

2.3.1. 효율성 분석 값

효율성 분석을 위해 농업유통법인 587개를 대상으로 매출액과 투입비용, 직원수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추정을 위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수를 투입 자료로 사용하였다. 산출 자료는 농업유통법인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업유통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24억 원이며, 최소 매출액은 1백만 원인 반면, 최대 매출액은 510억 원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은 평균 매출원가가 21억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327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유통법인의 평균 직원 수는 9.8명으로 나타났다.

<표 4-11> 농업유통법인의 투입·산출 자료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산출 변수	매출액	2,439.5	5,072.0	1	50,980
	매출원가	2,078.4	4,313.0	1	41,102
투입 변수	판매비와 관리비	327.0	800.8	0	8,031
	직원수	9.8	13.3	1	137

농업유통법인을 대상으로 DEA모형에 의해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순수기술 효율성의 값을 추정하였다.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 값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표

4-12).

기술효율성은 0.78로 추정되었으며,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분리해보면 규모효율성이 0.93로 계산된 반면 순수기술효율성은 0.84로 추정되었다. 규모효율성이 1이하란 의미는 결국 규모의 수익증가나 수익감소의 상태에 농업유통법인이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2>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 분석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술효율성	587	0.779	0.161	0.079	1.000
규모효율성	587	0.928	0.103	0.148	1.000
순수기술효율성	587	0.840	0.151	0.140	1.000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 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587개 농업유통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21개(3.58%),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92개(15.67%),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39개(6.64%)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효율성 값이 1미만인 비효율적인 농업유통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565개(96.42%),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495개(84.33%),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548개(93.36%)로 나타났다.

<표 4-13> 농업유통법인의 기술효율성 분포

구 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비효율적	0.5이하	33	5.62	20	3.41	6	1.02
	0.5~0.6	32	5.45	20	3.41	7	1.19
	0.6~0.7	76	12.95	59	10.05	4	0.68
	0.7~0.8	137	23.34	88	14.99	23	3.92
	0.8~0.9	177	30.15	149	25.38	82	13.97
	0.9~1.0	111	18.91	159	27.09	426	72.57
효율적	1	21	3.58	92	15.67	39	6.64
합 계		587	100	587	100	587	100

2.3.2. 규모의 경제성 분석

농업유통법인의 규모의 경제성 분석은 DEA모형 중의 하나인 기술효율성 모형의 람다 값(λ)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농업유통법인의 규모수익을 살펴보면, 현재 농업유통법인의 상태가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인 법인은 142개(24.2%),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인 법인은 42개(7.2%),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법인은 403개(68.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 상태에 있는 농업유통 법인은 투입량 증가에 대해 산출물의 증가비율이 더 크므로 산출물의 증가에 노력하는 것이 기술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현재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농업유통 법인은 투입요소 증가에 대해 산출물의 증가비율이 훨씬 작으므로 투입요소의 감소에 노력하는 것이 기술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4-14> 농업유통법인의 규모수익

(단위 : 개, %)

구 분	IRS	CRS	DRS	합계
법인 수	142	42	403	587
비율	24.19	7.16	68.65	100.00

2.3.3. 경영효율 개선방안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농업유통법인의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효율성을 분석한 587개 농업유통법인 중 하나인 특정 법인의 사례를 통해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별 측정된 변수 값과 효율적 가상지점 변수 값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법인의 투입요소 중 매출원가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515백만 원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439.4백만 원으로 매출원가에서 75.6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요소 중 판매비와 관리비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25백만 원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21.3백만 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3.7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입요소 중 직원수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2명이고 효율적 가상지점

의 변수 값(목표치)이 1.7명으로 직원수에서 0.3명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농업유통법인의 경영효율 개선안

기술효율성 값		0.853(IRS)		
준거지점	238(0.121), 293(0.045), 334(0.616), 579(0.218)			
	측정값	효율적 값	개선량	
매출액(백만원)	540	540	0	
매출원가(백만원)	515	439.35	75.65	
판매비(백만원)	25	21.33	3.67	
직원수(명)	2	1.71	0.29	

2.4. 농업서비스법인의 효율성 분석

2.4.1. 효율성 분석 값

효율성 분석을 위해 농업서비스법인 108개를 대상으로 매출액과 투입비용, 직원수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추정을 위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수를 투입 자료로 사용하였다. 산출 자료는 농업서비스법인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업서비스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13억 원이며, 최소 매출액은 1백만 원인 반면, 최대 매출액은 165억 원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은 평균 매출원가가 11억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202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농업서비스법인의 평균 직원 수는 7.4명으로 나타났다.

<표 4-16> 농업서비스법인의 투입·산출 자료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산출 변수	매출액	1,289.6	3,081.1	1	16,487
	매출원가	1,091.1	2,594.5	1	13,941
투입 변수	판매비와 관리비	201.6	522.8	0	3,084
	직원수	7.4	7.1	1	38

농업서비스법인을 대상으로 DEA모형에 의해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의 값을 추정하였다. 농업서비스법인의 효율성 값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표 4-17).

기술효율성은 0.77로 추정되었으며,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분리해보면 규모효율성이 0.89로 계산된 반면 순수기술효율성은 0.85로 추정되었다. 규모효율성이 1이하란 의미는 결국 규모의 수익증가나 수익감소의 상태에 농업서비스법인이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7> 농업서비스법인의 효율성 분석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술효율성	108	0.766	0.210	0.108	1.000
규모효율성	108	0.890	0.149	0.215	1.000
순수기술효율성	108	0.853	0.182	0.223	1.000

농업서비스법인의 효율성 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108개 농업서비스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11개 (10.19%),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35개(32.41%),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11개 (10.19%)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효율성 값이 1미만인 비효율적인 농업서비스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97개(89.81%),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73개(67.59%),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97개 (89.81%)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농업서비스법인이 비효율적인 운영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8> 농업서비스법인의 기술효율성 분포

구 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비효율적	0.5이하	13	12.04	5	4.63	3	2.78
	0.5~0.6	5	4.63	7	6.48	5	4.63
	0.6~0.7	12	11.11	8	7.41	3	2.78
	0.7~0.8	15	13.89	7	6.48	5	4.63
	0.8~0.9	36	33.33	25	23.15	26	24.07
	0.9~1.0	16	14.81	21	19.44	55	50.93
효율적	1	11	10.19	35	32.41	11	10.19
합 계		108	100	108	100	108	100

2.4.2. 규모의 경제성 분석

농업서비스법인의 규모의 경제성 분석은 DEA모형 중의 하나인 기술효율성 모형의 람다 값(λ)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농업서비스법인의 규모수익을 살펴보면, 현재 농업서비스법인의 상태가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인 법인은 48개(44.4%),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인 법인은 11개(10.2%),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법인은 49개(45.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 상태에 있는 농업서비스 법인은 투입량 증가에 대해 산출물의 증가비율이 더 크므로 산출물의 증가에 노력하는 것이 기술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현재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농업서비스 법인은 투입요소 증가에 대해 산출물의 증가비율이 훨씬 작으므로 투입요소의 감소에 노력하는 것이 기술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4-19> 농업서비스법인의 규모수익

(단위 : 개, %)

구 분	IRS	CRS	DRS	합계
법인 수	48	11	49	108
비율	44.44	10.19	45.37	100.00

4.2.3. 경영효율 방안

농업서비스법인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농업서비스법인의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효율성을 분석한 108개 농업서비스법인 중 특정 법인의 사례를 통해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별 측정된 변수 값과 효율적 가상지점 변수 값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법인의 투입요소 중 매출원가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721백만 원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648.4백만 원으로 매출원가에서 72.6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요소 중 판매비와 관리비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52백만 원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46.8백만 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5.2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입요소 중 직원수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7명이고 효율적 가상지점

의 변수 값(목표치)이 1.8명으로 직원수에서 5.3명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0> 농업서비스법인의 경영효율 개선안

기술효율성 값		0.899(DRS)	
준거지점	6(0.075), 35(0.063), 38(0.862)		
	측정값	효율적 값	개선량
매출액(백만원)	786	786	0
매출원가(백만원)	721	648.38	72.62
판매비(백만원)	52	46.76	5.24
직원수(명)	7	1.75	5.25

2.5.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 분석

2.5.1. 효율성 분석 값

효율성 분석을 위해 농업기타법인 284개를 대상으로 매출액과 투입비용, 직원수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성 추정을 위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수를 투입 자료로 사용하였다. 산출 자료는 농업기타법인의 매출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농업기타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14억 원이며, 최소 매출액은 1백만 원인 반면, 최대 매출액은 217억 원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용은 평균 매출원가가 11억 원이며, 판매비와 관리비는 223백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농업기타법인의 평균 직원 수는 8.2명으로 나타났다.

<표 4-21> 농업기타법인의 투입·산출 자료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평 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산출 변수	매출액	1,413.7	2,471.7	1	21,687
	매출원가	1,145.9	2,145.9	1	18,855
투입 변수	판매비와 관리비	222.9	711.0	0	2,750
	직원수	8.2	11.3	1	54

농업기타법인을 대상으로 DEA모형에 의해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의 값을 추정하였다.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 값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표 4-22).

기술효율성은 0.47로 추정되었으며,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분리해보면 규모효율성이 0.81로 계산된 반면 순수기술효율성은 0.58로 추정되었다. 규모효율성이 1이하란 의미는 결국 규모의 수익 증가나 수익 감소의 상태에 농업기타법인이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표 4-22>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 분석

구 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기술효율성	284	0.467	0.223	0.067	1.000
규모효율성	284	0.814	0.198	0.163	1.000
순수기술효율성	284	0.581	0.239	0.169	1.000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 값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284개 농업기타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6개(2.11%),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35개(12.32%),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10개(3.52%)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효율성 값이 1미만인 비효율적인 농업기타법인 수는 기술효율성 모형에서는 278개(97.89%),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249개(87.68%),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274개(96.48%)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농업기타법인이 비효율적인 운영상태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3>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 분포

구 분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빈도수	비율(%)
비효율적	0.5이하	172	60.56	123	43.31	23	8.10
	0.5~0.6	27	9.51	39	13.73	16	5.63
	0.6~0.7	32	11.27	36	12.68	26	9.15
	0.7~0.8	28	9.86	26	9.15	36	12.68
	0.8~0.9	16	5.63	18	6.34	51	17.96
	0.9~1.0	3	1.06	7	2.46	122	42.96
효율적	1	6	2.11	35	12.32	10	3.52
합 계		284	100.00	284	100.00	284	100.00

2.5.2. 규모의 경제성 분석

농업기타법인의 규모의 경제성 분석은 DEA모형 중의 하나인 기술효율성 모형의 람다 값(λ)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농업기타법인의 규모수익을 살펴보면, 현재 농업기타법인의 상태가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인 법인은 241개(84.9%),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인 법인은 10개(3.5%),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법인은 33개(11.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 상태에 있는 농업기타법인은 투입량 증가에 대해 산출물의 증가비율이 더 크므로 산출물의 증가에 노력하는 것이 기술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반면에 현재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농업기타법인은 투입요소 증가에 대해 산출물의 증가비율이 훨씬 작으므로 투입요소의 감소에 노력하는 것이 기술효율을 높일 수 있고 규모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표 4-24> 농업기타법인의 규모수익

(단위 : 개, %)

구 분	IRS	CRS	DRS	합계
법인 수	241	10	33	284
비율	84.86	3.52	11.62	100.00

2.5.3. 경영효율 개선방안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농업기타법인의 경영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효율성을 분석한 284개 농업기타법인 중 특정 법인의 사례를 통해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별 측정된 변수 값과 효율적 가상지점 변수 값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법인의 투입요소 중 매출원가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684백만 원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324.4백만 원명으로 매출원가에서 359.6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입요소 중 판매비와 관리비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33백만 원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15.7백만 원으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17.3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투입요소 중 직원 수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9명이고 효율적 가상지점

의 변수 값(목표치)이 4.3명으로 직원 수에서 4.7명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5> 농업기타법인의 경영효율 개선안

기술효율성 값		0.474(IRS)	
준거지점	49(0.211), 77(0.148), 224(0.177), 278(0.464)		
	측정값	효율적 값	개선량
매출액(백만원)	713	713	0
매출원가(백만원)	684	324.39	359.61
판관비(백만원)	33	15.65	17.35
직원수(명)	9	4.27	4.73

제5장

농업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1. 환경분석

경영학의 한 분과인 전략경영에서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이를 위한 경쟁우위의 원천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의 경영의사결정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주는 기업 외부환경으로 거시환경과 산업환경을 살펴보았다. 거시환경은 기업이 속한 산업에 영향을 주는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적 요인을 포함하며, 산업환경은 기업이 속한 산업 내 고객·경쟁자·공급자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1.1. 거시환경분석

농업법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인(drivers)들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으로 작용하는가를 분석하여, 전략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외부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내부능력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농업법인의 전략적 시사점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거시환경분석은 중장기 전략수립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으로 사회적 환경분석이라고도 한다. 이는 조직의 단기적인 활동에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반적인 환경과 농업법인이 속한 산업에 영향을 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요인을 분석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5-1> 거시환경 분석 지표들

정치환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권력과 정책노선 • 규제완화, 민영화 • 조세, 특허 • 통일, 남북경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혁정책, 지원정책 • 무역 장벽 및 자유화 • 부패, 정치적 리스크 • 법규
경제환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성장율 • 금융/재정정책 • 소비성향 • 산업구조 변화 • 임금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 환율 • 구조조정 • 가처분소득수준 • 원유가, 금융시장 • 시장/경쟁 구조
사회/ 문화환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 •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 환경, 에너지에 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 유연성 • 여성의 사회진출 • 교육수준
기술환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 신제품 혁신 정책적 지원 • 산업/경제의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기술(IT) • 기술혁신 및 확산 • 인터넷 기반기술
기타환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1.1.1. 정치환경요인

농업법인에 대한 정치환경요인은 크게 법률을 통한 규제와 세제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률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따라 사업내용, 출자제한,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인설립 및 조직변경, 컨설팅 및 자금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적 내용에 따라 농업법인의 전략 및 경영이 영향을 받게 된다.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세의 법인세·양도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지방세의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와 법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그리고 조합원 또는 사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조치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면세조치가 농업법인의 효율성과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최근 농업유통 및 농산물 가공법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인들은 WTO/DDA, FTA 등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무역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수입농산물이 증가할 경우 농업법인의 경쟁력도 영향을 받는다.

1.1.2. 경제환경요인

경제환경은 경제권 내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적 요인을 의미하지만, 농업법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경제성장, 이자율, 환율 및 물가상승 등이 주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소비증대로 이어지므로, 농업법인의 매출 성장에도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IMF, 세계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상황에서 여타 산업부문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경기침체시 농업법인의 매출액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율은 농업법인의 금융비용을 결정하며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농업법인이 자본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자금 등 저리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저리의 정부융자가 이루어지면 농업법인의 투자증대로 이어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가능하다.

환율은 해외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해외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농업법인의 경우에도 수출시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경쟁력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1.1.3. 사회·문화환경요인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은 사회의 문화적, 인구통계학적, 종교적 상황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소비패턴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에 인구구조에 따른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는 농업법인의 신제품 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노년층의 증가는 실비용 식품이라는 새로운 상품의 등장을 초래한다. 또한 1인 세대 및 맞벌이 가족 증가로 신선편이제품 및 가공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사회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1.1.4. 기술환경요인

사회의 전반적인 기술발전추세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 제품의 쇠퇴와 함께 새로운 제품을 출현시키며, 전통적인 산업쇠퇴와 함께 새로운 산업의 형성을 초래

하기도 한다.

최근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식품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농업법인의 생산 및 가공기술에도 새로운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신기술의 도입은 생산방식 또는 새로운 제품개발로 이어져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식품판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농업법인체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판매망을 구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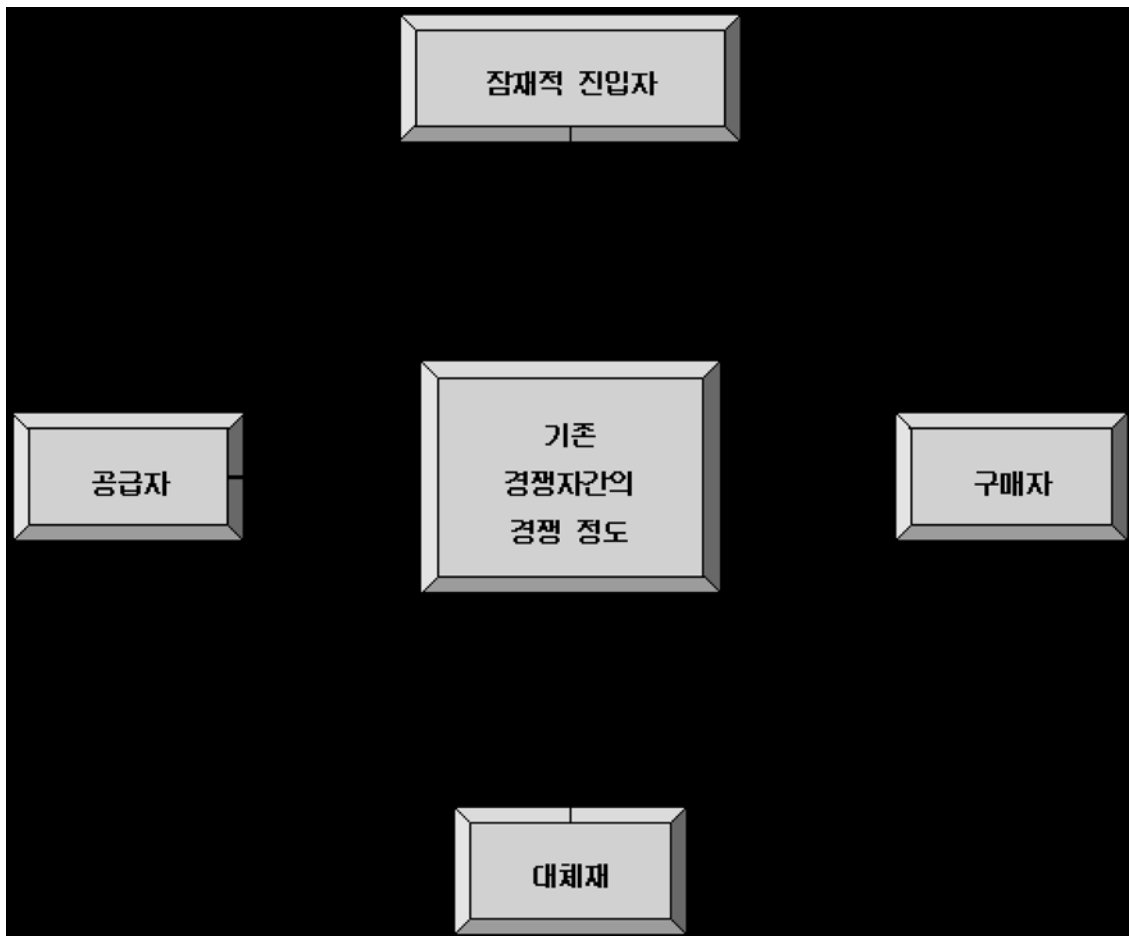
<표 5-2> 농업법인의 거시환경 분석

정치환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년 제정) • 농업법인에 대한 국세·지방세·부가가치세의 면세 또는 감면 • WTO/DDA, FTA 국제무역환경 변화
경제환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MF, 세계금융위기 요인 • 환율변동 • 국제 곡물가격 폭등(2007~2008년) • 국제 원유가격 상승
사회/ 문화환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추세 • 1인세대 및 맞벌이 가족 증대 • 농촌관광 등 새로운 수요 증대
기술환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와 연계한 식품기술 • IT와 연계한 판매망 구축

1.2. 산업환경분석

산업구조분석은 산업의 경쟁강도와 수익성 및 산업의 구조적 매력도를 결정하는 5가지 경쟁요인을 분석하여 농업법인의 산업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환경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경쟁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의 원인과 각각의 경쟁 강도를 파악하며, 산업의 이윤잠재력, 즉 산업의 매력도를 파악한

다.



<그림 5-1> 산업내의 경쟁 결정요인

1.2.1. 산업내 경쟁정도

농업법인들은 사업유형별로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 한 경쟁업체의 움직임은 다른 경쟁업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복적 조치나 그에 상응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 때문에 농업법인의 당기순이익은 산업군의 경쟁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은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업체들 모두에게 그 산업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산업 내에서 제품의 혁신 정도가 낮다는 것은 제품간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사이에 전환비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법인의 고정비용이 높다거나 어떤 사업의 고정비용 비중이 일반적으로 높다면, 법인들은 총비용 밑으로 가격을 떨어뜨려서라도 최소한 고정비용은 충족하려고

할 것이다. 즉, 높은 고정비용은 가격경쟁으로 유도하게 되어 경쟁정도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농업법인의 경우 자산특정성으로 인해 산업에서 퇴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수 목적의 자산을 가진 농업법인으로서는 그 산업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가는 것이다. 이 경우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게 되므로 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1.2.2. 잠재적 진입자

잠재적 진입자는 산업구조 분석에서 진입장벽과 더불어 중요한 하나의 결정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진입장벽이 낮아서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이 클수록 그 산업의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진입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모의 경제는 비용면에서의 우위를 말하는데, 어떤 산업에 이미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 있다면 신규 진입자로서는 비슷한 수준의 비용구조를 가지고 경쟁하기 위해서 진입시 대규모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둘째, 제품 차별화가 이루어져 있는 산업에 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쟁자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customer loyalty)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어떤 산업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면, 특히 그 투자가 회수하기도 힘들고 초기에 대량으로 들어가는 연구개발비나 시설비와 같은 것이라면,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전환비용이란 구매자가 특정 제품을 쓰다가 다른 제품으로 바꿀 때 한번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러한 전환비용이 높다면 새로운 진입자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용이나 성능에 있어서 월등한 차이를 내야만 하고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다섯째, 새로운 진입자가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유통망을 확보해야만 한다면 그것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새로운 진입자가 그 유통망들로 하여금 자사 제품을 취급하도록 설득하려면 높은 판촉비용 등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1.2.3. 구매자의 협상력

구매자가 가격인하 압력을 가하는 능력, 더 높은 품질과 서비스를 요구하는 협상력 등을 의미하며 구매자 혹은 구매자 집단의 힘이 강해질수록 산업에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구매자가 협상력을 가지게 되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

매자가 농업법인으로 부터 대량의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협상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구매자가 후방으로 수직계열화를 통해 제품을 스스로 생산해 낼 잠재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농업법인의 경쟁력은 낮다. 셋째, 제품이 표준화되어 차별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급자를 바꿀 전환비용이 아주 낮은 경우에도 구매자의 교섭력이 높은 경우이다.

1.2.4. 공급자의 협상력

공급자가 제품에 대해 가격/서비스의 질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공급자의 협상력이 클수록 산업에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공급자의 협상력이 커지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의 공급자가 다수의 구매자를 상대로 거래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협상력이 커진다. 둘째, 공급자 전환비용이 아주 큰 경우와 공급자 제품에 대한 대체재가 없는 경우에도 농업법인은 원료 공급자에 대한 교섭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

1.2.5. 대체재

한 산업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은 다른 산업에서 대체제품을 만드는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체재는 그 모양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소비자의 욕구를 다른 제품과 같이 채워 줄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그만큼 산업 구조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통상적으로 한 산업의 대체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 내는 것은 어려운 분석이다.

이러한 대체품이 산업의 경쟁가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존업체가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대체품이 잠재적인 가격상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2. 효율성 요인 분석

2.1. 분석모형 : Tobit 모형

개별 특성변수가 효율성에 미치는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특성변수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선형계획법에 의해 계산된 농업법인의 효율성 값의 범위는 0과 1사이에 있다. 이러한 경우 효율적인 농업법인의 효율성 값은 1을 갖게 되므로 이러한 농업법인에 대한 효율성 차이는 구분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형계획법에 의하여 계산된 효율성 값의 역수를 구하였다. 효율성 값의 역수를 취하면 농업법인의 효율성 값은 1이상의 값을 갖게 된다. 즉, 1이하의 값을 가질 수 없는 단절된(Truncated) 형태가 된다. 종속변수의 값이 어떤 제약에 의해 일부가 단절될 경우 Tobit모형을 이용하게 된다. 단절된 분포를 갖는 종속변수의 경우에 최소자승법(OLS)을 적용하게 되면 추정모수가 편의(Bias)를 가지게 되고 일치성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Tobit모형은 종속변수의 값이 특정 값에서 단절됨으로써 그 이상 또는 그 이하의 값을 관측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설명변수의 값은 어떤 특정한 값이나 범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DEA에 의해 계산된 농업법인의 효율성 값을 역수로 취한 다음 Tobit모형의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농업법인의 특성변수로 설정하였다.

$$(1) IE_i^* = X_i' \beta + \varepsilon_i$$

$$IE_i = 1, \text{ if } IE_i^* \leq 1$$

$$IE_i = IE_i^*, \text{ if } IE_i^* > 1.$$

여기에서 IE_i^* 는 i 번째 농업법인 효율성의 역수이고 X_i 는 농업법인의 특성변수이다. 오차항 ε_i 은 정규분포를 한다고 가정한다.

효율성의 역수 값이 1보다 작은 IE_i^* 의 값은 정확히 관측될 수 없기 때문에 1의 값으로만 표현된다. 종속변수의 값이 단절된 경우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결과는 편의를 갖게되므로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Method)에 근거한 Tobit모형을 통하여 추정한다.

$$(2) L = \prod_{IE_i > 1} \phi(IE_i) \prod_{IE_i = 1} \Phi(IE_i)$$

여기에서 ϕ 는 표준정규밀도함수(Standard Normal Density Function)이고, Φ 는 표준누적분포함수(Standard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나타낸다. 식 (2)를 로그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ln L = \sum_{i=1}^n -\frac{1}{2} \left[\ln(2\pi) + \ln \sigma^2 + \frac{(IE_i - X_i' \beta)^2}{\sigma^2} \right] \\ + \sum_{i=1}^n \ln \left[\Phi \left(\frac{-X_i' \beta}{\sigma} \right) \right]$$

2.2. 분석결과

2.2.1. 농업생산법인의 효율성 요인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생산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DEA에 의해 계산된 기술효율성 값의 역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로는 자산규모, 자본규모, 법인유형, 법인지역, 사무실, 고용종사자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산규모, 자본규모, 법인유형, 운영기간으로 분석되었다.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일수록, 자본규모가 클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자산규모가 적은 법인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산규모, 자본규모로 분석되었다. 자본규모가 클수록, 자산규모는 적을수록 농업생산법인의 순수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무실 유무, 운영기간으로 분석되었다. 사무실이 있는 법인일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규모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3> 농업생산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설명변수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자산규모	4.00×10^{-5}	2.070**	3.67×10^{-5}	1.859*	1.06×10^{-5}	0.477
자본규모	-7.95×10^{-5}	-2.250**	-1.23×10^{-5}	-3.306***	4.46×10^{-5}	1.114
법인유형	-0.240	-2.285**	-9.67×10^{-2}	-0.914	-5.21×10^{-2}	-0.405
법인지역	3.38×10^{-2}	0.169	0.111	0.551	0.295	1.258
사무실유무	-8.66×10^{-2}	-0.776	-2.87×10^{-2}	-0.252	-0.823	-6.670***
고용종사자수	-5.14×10^{-3}	-1.100	-6.40×10^{-3}	-1.322	-2.66×10^{-4}	-5.25×10^{-2}
운영기간	-1.55×10^{-2}	-1.77*	-8.66×10^{-3}	-0.982	-2.21×10^{-2}	-2.08**
상수항	0.723	4.810***	1.4997	9.472***	0.755	4.23***
LOG-LIKELIHOOD FUNCTION	-2340.7888		-1132.8334		-758.142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2.2.2. 농업가공법인의 효율성 요인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농업가공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DEA에 의해 계산된 기술효율성 값의 역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로는 자산규모, 자본규모, 법인유형, 법인지역, 사무실, 고용종사자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본규모, 운영기간으로 분석되었다. 자본규모가 클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본규모, 고용종사자수, 사무실 유무로 분석되었다. 자본규모가 클수록, 고용인원이 적을수록, 사무실이 없는 법인일수록 농업가공법인의 순수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무실 유무, 고용종사자수운영기간으로 분석되었다. 사무실이 있는 법인일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고용인원이 적은 법인일수록 규모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 농업가공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설명변수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자산규모	-3.37×10^{-5}	-1.089	-3.56×10^{-5}	-1.096	5.93×10^{-6}	0.176
자본규모	-1.92×10^{-4}	-2.193**	-3.36×10^{-4}	-3.523***	-1.40×10^{-4}	-1.408
법인유형	4.13×10^{-2}	0.293	6.46×10^{-2}	0.445	3.47×10^{-2}	0.194
법인지역	1.18×10^{-1}	0.493	0.305	1.236	0.256	0.901
사무실	-2.49×10^{-1}	-1.537	6.99×10^{-1}	3.949***	-0.754	-4.048***
고용종사자수	8.85×10^{-3}	1.434	1.18×10^{-2}	1.810*	1.88×10^{-2}	2.833***
운영기간	-1.88×10^{-2}	-1.691*	-9.29×10^{-3}	-0.819	-3.86×10^{-2}	-2.595***
상수항	1.236	5.766***	1.738	7.216***	0.424	1.659
LOG-LIKELIHOOD FUNCTION	-825.222		-365.046		-423.801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2.2.3.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 요인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DEA에 의해 계산된 기술효율성 값의 역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로는 자산규모, 자본규모, 법인유형, 법인지역, 사무실, 고용종사자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본규모, 법인지역으로 분석되었다. 자본규모가 클수록, 법인지역이 광역시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본규모로 분석되었다. 자본규모가 클수록 농업유통법인의 순수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산규모, 자본규모, 고용종사자수로 분석되었다. 자산규모가 적을수록, 자본규모가 클수록, 고용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규모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설명변수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자산규모	2.41×10^{-5}	0.762	-2.77×10^{-5}	-0.717	7.04×10^{-5}	2.083**
자본규모	-2.85×10^{-4}	-2.717***	-3.47×10^{-4}	-2.978***	-3.24×10^{-4}	-2.688***
법인유형	-3.13×10^{-2}	-0.243	-5.84×10^{-2}	-0.436	3.70×10^{-2}	0.256
법인지역	-2.85×10^{-1}	-1.791*	-0.182	-1.117	-0.291	-1.564
사무실	-6.92×10^{-2}	-0.514	8.89×10^{-2}	0.637	4.68×10^{-2}	0.300
고용종사자수	-8.61×10^{-4}	-0.145	-3.83×10^{-3}	-0.615	1.31×10^{-2}	2.168**
운영기간	6.21×10^{-3}	0.639	2.44×10^{-3}	0.243	1.16×10^{-2}	1.074
상수항	1.738	9.443***	2.167	10.834***	1.013	4.730***
LOG-LIKELIHOOD FUNCTION	-707.598		-480.328		-452.53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2.2.4. 농업서비스법인의 효율성 요인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서비스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DEA에 의해 계산된 기술효율성 값의 역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로는 자산규모, 자본규모, 법인유형, 법인지역, 사무실, 고용종사자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법인유형, 운영기간으로 분석되었다.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농업회사법인일수록, 운영기간이 짧은 법인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법인유형, 운영기간으로 분석되었다.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농업회사법인일수록, 운영기간이 짧은 법인일수록 순수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6> 농업서비스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설명변수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자산규모	-1.98×10^{-4}	-1.128	-3.48×10^{-4}	-1.466	-9.31×10^{-5}	-0.520
자본규모	-2.99×10^{-4}	-0.612	-3.66×10^{-4}	-0.632	-2.56×10^{-4}	-0.501
법인유형	5.61×10^{-1}	1.772*	6.45×10^{-1}	1.938*	5.76×10^{-1}	1.541
법인지역	1.35×10^{-1}	0.181	0.363	0.478	0.404	0.537
사무실	-9.14×10^{-2}	-0.335	-3.03×10^{-2}	-0.103	-1.30×10^{-1}	-0.446
고용종사자수	3.46×10^{-2}	0.927	5.01×10^{-2}	1.253	3.06×10^{-2}	0.772
운영기간	4.08×10^{-2}	1.808*	6.77×10^{-2}	2.820***	2.36×10^{-2}	0.956
상수항	0.396	0.896	0.456	0.947	0.689	1.311
LOG-LIKELIHOOD FUNCTION	-167.052		-98.305		-91.94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2.2.5.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 요인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DEA에 의해 계산된 기술효율성 값의 역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로는 자산규모, 자본규모, 법인유형, 법인지역, 사무실, 고용종사자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법인유형, 법인지역, 사무실유무로 분석되었다.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일수록, 법인지역이 광역시일수록, 사무실이 없는 법인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수기술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자산규모, 자본규모, 법인유형, 사무실, 고용종사자수, 운영기간으로 분석되었다. 자산 및 자본규모가 클수록,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일수록, 사무실이 없을수록, 고용종사자수가 적을수록, 운영기간이 짧은 법인일수록 순수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고용종사자수, 운영기간으로 분석되었다.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고용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규모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7>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설명변수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추정계수	t-값
자산규모	-9.60×10^{-5}	-1.550	-1.45×10^{-4}	-2.561 ^{***}	-2.29×10^{-5}	-0.282
자본규모	-1.51×10^{-5}	-0.153	-3.00×10^{-4}	-2.009 ^{**}	7.61×10^{-5}	0.644
법인유형	-3.25×10^{-1}	-1.682 [*]	-4.16×10^{-1}	-2.130 ^{**}	-8.27×10^{-2}	-0.415
법인지역	-1.00	-1.869 [*]	-0.805	-1.440	-1.096	-1.639
사무실	4.33×10^{-1}	1.726 [*]	9.24×10^{-1}	3.433 ^{***}	-3.26×10^{-1}	-1.256
고용종사자수	-2.73×10^{-3}	-0.172	6.76×10^{-2}	3.762 ^{***}	-5.91×10^{-2}	-3.275 ^{***}
운영기간	-1.51×10^{-2}	-1.116	2.33×10^{-2}	1.661 [*]	-2.84×10^{-2}	-1.994 ^{**}
상수항	1.9243	5.993 ^{***}	1.2966	3.891 ^{***}	2.171	6.365 ^{***}
LOG-LIKELIHOOD FUNCTION	-518.554		-388.448		-313.982	

주 :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있음

제6장

해외사례 및 농업법인의 활성화 방안

1. 일본의 농업법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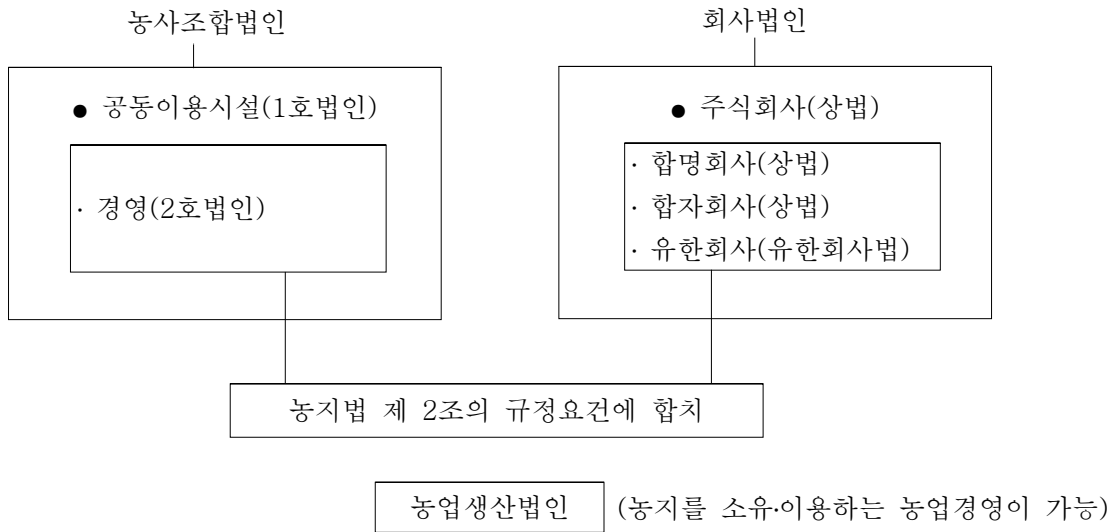
1.1. 농업법인의 형태와 특징

일본의 농업법인을 살펴보면 제도상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조합의 형태를 가진 농사조합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형태를 가진 회사법인이다. 또한 이러한 법인 중에서 농지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농업생산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법인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지 등에 관련된 제권리의 취득이 가능하다.

농사조합법인은 농협법상에서 그 법인격이 인정되고 있는데 농업생산면에서 협업의 추진보다는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합법인의 주요 사업으로는 ① 법인 스스로가 농업경영을 행하는 법인(2號법인), ② 기계·시설의 공동이용이나 공동 작업을 행하는 법인(1號법인) 등의 형태가 있다. 그 가운데 농업경영을 행하는 2호법인은 그 자체가 경영활동을 행한다는 점에서 농가와 동일한 경영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반면, 1호법인의 경우는 농업자의 협동이용조직으로서 협동조합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회사형태를 취하고 있는 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 4가지 형태가 있다. 이들 법인은 영리사업 일반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유한회사는 유한회사법, 합명·합자·주식회사는 상법에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그림 6-1).

<그림 6-1> 일본 농업법인의 종류



다음으로 농업법인제도에서 중요한 것이 1962년 농지법개정에 의해 창설된 「농업생산법인」 제도이다. 농업생산법인은 “농지나 채초방목지를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행할 수 있는 법인”이다. 양계나 양돈과 같이 농지가 없어도 농업경영이 가능한 법인은 별도로 농업생산법인의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경종농업을 비롯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농업을 행하는 법인은 조합법인형태든, 회사법인형태든 간에 농업생산법인이라고 하는 농지법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농업생산법인이란 농지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으로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지 또는 방목지의 소유권이나 사용수익권을 취득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현행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생산법인의 요건으로는 첫째, 법인의 형태가 농사조합법인,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주식양도에 제한) 등 5가지 중 하나일 것, 둘째, 사업요건, 구성원 요건, 경영자 책임요건 등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등이다.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농업과 병행하여 행하는 임업 및 농사조합법인의 경우는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포함)과 그 법인이 행하는 농업과 관련된 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제조·가공 등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 등이다. 농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① 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제조 또는 가공업, ② 농축산물의 저장·운반, ③ 농축산물의 판매, ④ 농업생산에 필요한 자재의 제조, ⑤ 농작업의 수탁 등이다. 부대사업이란 농업 및 농업관련사업에 부수된 사업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계·시설의 잉여가동력을 이용하는 업무를 말한다.

한편, 법인의 구성원으로는 ① 농지의 권리를 제공한 개인, ② 그 법인의 사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 ③ 농업생산법인 출자육성사업 규정에 의해 현물 출자한 농지보유 합리화법인, ④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연합회, ⑤ 그 법인과 일정기간 동안(5년이상) 직거래 계약을 맺은 소비자나 농작업의 위탁자 등 일정 범위내에서 법인이 행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개인 및 그 법인에게 신기술을 제공한 기업 등이다. 다만, ⑤ 항에 있어서는 유한회사의 경우 당해 구성원이 가질 수 있는 의결권의 합계가 전체 의결권의 1/4이하이어야 하며, 또한 당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1인당 의결권이 그 법인의 의결권 총수의 1/10이하로 한정되고 있다. 또한 경영책임자 수의 과반을 점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법인의 요건은 계속요건으로 되어 있어 설립 후 요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요건시정을 위한 조치를 강구시키되, 그래도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그 경영농지를 매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의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농업위원회는 요건을 위배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또는 임차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매수대상농지로 공시한다. ② 공시된 법인이 3개월 이내에 농업생산법인의 요건을 갖추려고 노력하여, 그 요건을 전부 회복한다면 공시는 취소되고 매수는 면제된다. ③ 3개월이 지나도 요건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 후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으로 된 농지를 양도하는 동시에 임차한 농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④ 그 기간을 경과하여도 양도 또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국가가 매수한다.

1.2. 일본농업법인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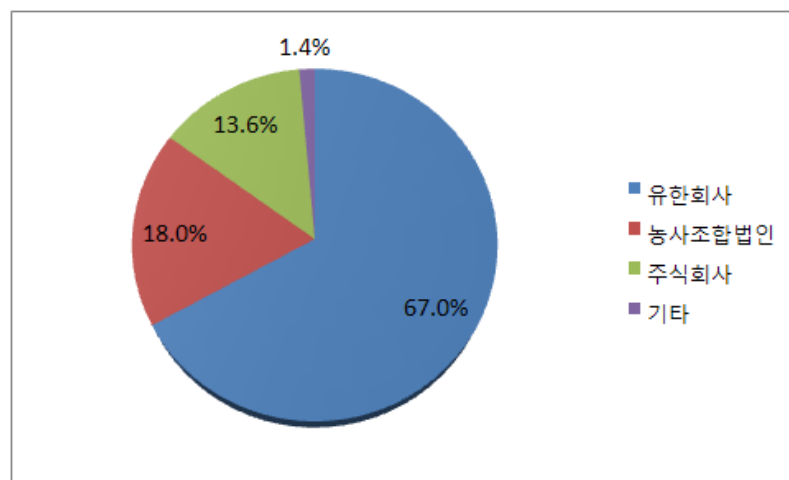
일본 농업법인제도의 주요한 변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92년 신농업정책을 통해 농정의 방향을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의 육성에 두고 구조개선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1993년에는 농지법의 개정을 통해 농업생산법인제도의 요건이 완화되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전국농업법인협회가 창설되었으며, 이는 1999년에 사단법인 일본농업법인협회의 출발점이 되었다. 최근 2001년에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업생산법인 제도가 다시 완화되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양도의 제한이라는 조건하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생산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일본 농업법인의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1~3억엔 규모의 법인체가 전체의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000~5,000만엔 규모의 법인체가 13.0%로 나타났다. 10억엔 이상의 법인체의 비중은 2000년 3.4%에서 2004년에는 4.5%, 2008년에는 6.1%로 대규모의 법인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 일본 농업법인의 매출액 규모

구 분	2008년		2004년		2000년	
	응답자수(명)	비율(%)	응답자수(명)	비율(%)	응답자수(명)	비율(%)
1000만엔 미만	24	3.1	17	2.8	25	7.1
1000~3,000만엔	78	9.9	58	9.6	28	7.9
3,000~5,000만엔	102	13.0	85	14.0	47	13.3
5,000~7,000만엔	78	9.9	68	11.2	50	14.2
7,000만엔~1억엔	83	10.6	76	12.5	37	10.5
1~3억엔	249	31.7	176	29.0	98	27.8
3~5억엔	70	8.9	58	9.6	32	9.1
5~10억엔	53	6.8	41	6.8	24	6.8
10억엔이상	48	6.1	27	4.5	12	3.4
평균	2억 7,054만엔		2억 3,281만엔		2억 6,373만엔	

2008년 현재 일본 농업법인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67% 유한회사로 기업형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농사조합법인이 18.0%, 주식회사가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2> 일본농업법인의 회사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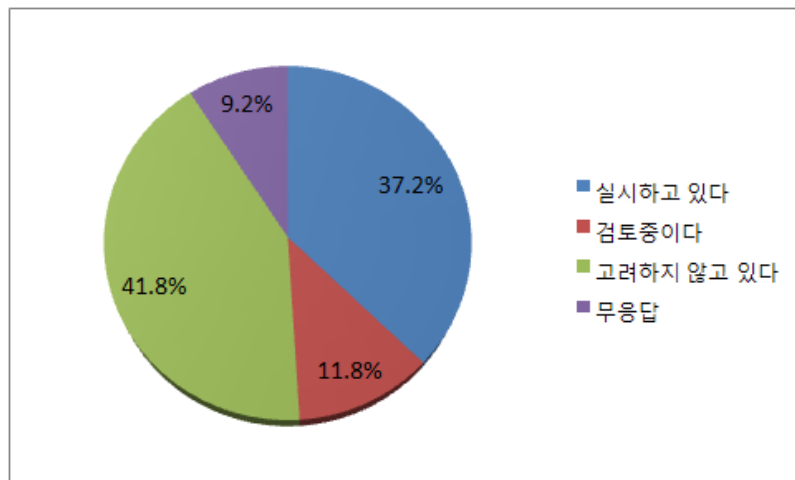
일본 농업법인은 다각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가공, 관광을 연계한 법인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산+판매+관광을 연계한 농업법인의 매출액 증가율은 126.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2> 일본 농업법인 유형별 매출액 및 성장율

유형	매출액	증가율('08년/'04년)
생산	2억 9,166만엔	120.0%
생산+판매	2억 2,735만엔	114.2%
생산+판매+관광	2억 2,637만엔	126.8%
생산+판매+가공	2억 5,696만엔	110.9%
생산+판매+관광+가공	4억 5,939만엔	115.1%

일본 농업법인은 전체의 70%가 직거래를 실시하고 있는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민 직거래가 55%로 가장 높고, 업체와의 직거래는 46%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거래 비중은 23.2%이며, 지역민과 업체와의 직거래는 31.3%,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거래는 14.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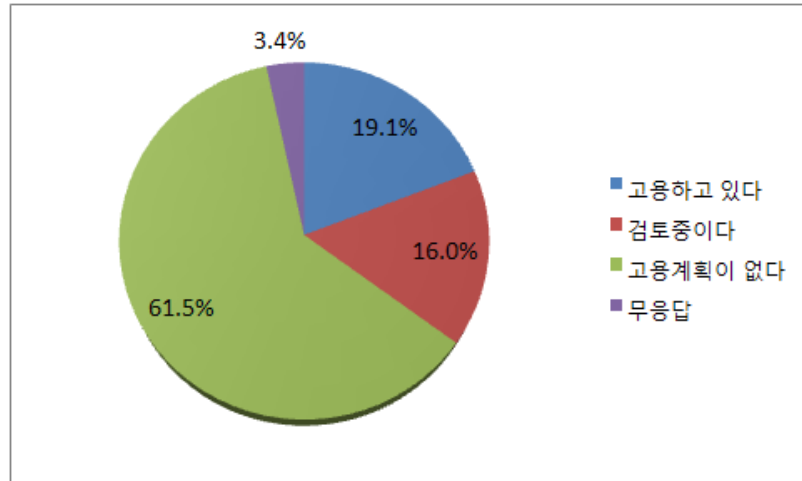
일본 농업법인의 소비자와의 교류현황을 살펴보면, 소비자와의 교류를 실시하고 있는 법인체인 업체가 37.2%, 검토 중이 11.8%, 고려하지 않고 있다가 4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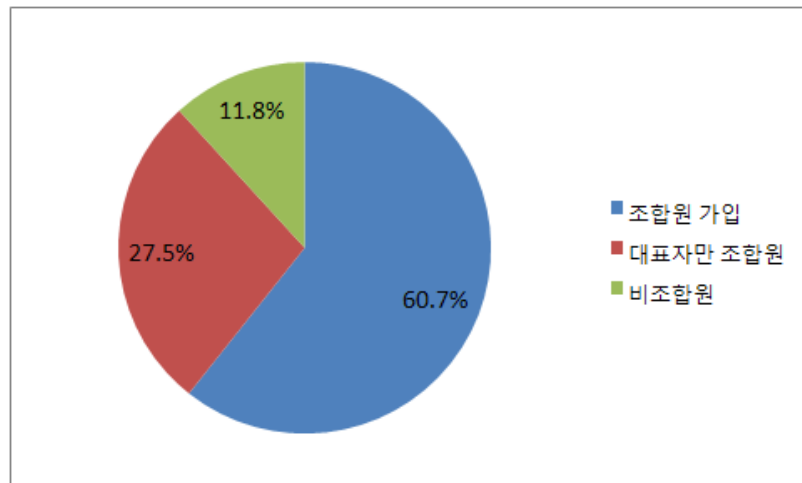
<그림 6-3> 일본농업법인의 소비자교류 현황

외국인 연수생 활용현황을 살펴보면, 외국인 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체의 19.1%이며, 검토 중인 법인체는 16.0%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인 61.5%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 농업법인이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법인이 조합원인 경우와 대표자가 조합원인 경우를 합하면 전체 88%가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80%가 농협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4> 일본농업법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



<그림 6-5> 일본농업법인의 협동조합 가입 현황

1.3. 농업법인의 장점

농업법인화의 장점은 크게 경영상의 이점과 세제우대, 자금차입 및 농지취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영상의 이점으로는 첫째, 경영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다. 특히 가계와 경영이 분리됨으로써 경영마인드 제고와 경영성과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법인설립으로 대외 신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특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손익분석을 명확히 할 수 있고, 상품 거래 및 직원 고용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다.

셋째, 법단체 설립으로 농업종사자도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 노동시간 등 근로기준 적용을 통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넷째, 농업법인은 후계인력의 확보와 새로운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가능하다. 법인 운영을 통해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할 수 있으며, 신규 창업이전에 농업법인에 취업하여 새로운 기술 및 경영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창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표 6-3> 농업법인의 경영상의 이점

경영관리능력 향상	1. 경영책임 등 경영자의 의식개혁 촉진 2. 가계와 경영의 분리
대외신용능력 향상	1. 계수관리의 명확화 및 각종 법정업무(설립 등기, 업무보고 등)로 거래상의 신용 능력 향상 2. 법인화로 이미지 제고, 상품거래 및 직원 고용 등 촉진
농업종사자의 복리후생 증진	1. 고용보험 등 농업종사자의 복리 증진 2. 노동시간 등 취업규칙의 정비, 급여제의 도입에 따른 근무 조건의 명확화
법인후계자의 원활한 확보와 신규취농자의 수용처 역할	1. 법인의 임원 및 직원 중 후계자 확보 가능 2. 취농 희망자가 경영능력, 농업기술의 습득 가능

농업법인의 설립을 통한 제도상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우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임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의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며, 적자금을 5년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다. 둘째, 자금 확보차원에서는 융자금액의 한도가 확대되고, 보증인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농지취득의 경우에도 농업생산법인은 농지의 현물출자를 통해 농지 취득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표 6-4> 농업법인의 제도상의 이점

세제우대	1. 소득의 분배에 의해 사업주에 대한 과세 경감
	2. 정률 과세의 법인세 적용
	3. 임원 보수의 급여 소득화에 따른 절세
	4. 임원 상여금의 손금 산입
	5. 퇴직 급여 등 손금 산입
	6. 적자금 5 년간 이월 공제
	7. 농용지 이용집적 준비금의 손금 산입
자금 차입	1. 융자한도액의 확대
	2. 자금차입에 대한 보증인 확보
농지취득 지원	1.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농경지 등을 현물출자 함으로써 농지취득의 부담 경감(농업생산법인출자육성사업)

1.4. 농업법인의 제도적 지원 내용

일본은 농업법인육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농업법인육성사업을 통해 농업법인의 경영개선에 대한 경영연수회 개최, 경영정보의 제공과 경영 컨설턴트 활동의 실시, 판매 촉진을 위한 식품업계 등과의 교류회 개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지역농업경영체육성사업을 통해 농업법인을 지역농업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있다.

셋째, 농업인력확보육성종합대책사업을 통해 농업법인에 취농 촉진을 위한 공동취업박람회 개최, 농업인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넷째, 농업인력확보육성종합대책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농업경영 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감각이 뛰어난 농업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해 취농 희망자에게 농업법인의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농업법인육성촉진사업을 통해 특정 농업법인에 대한 연수회 및 판매전략 검토, 경영확립지도, 경영개선을 위한 농업기계 임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농업법인의 경영기반 확립을 위해 다양한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Super L기금을 통해 법인을 포함한 경영체 육성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체육성 종합융자제도를 통해 단기운전자금,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슈퍼 S기금) 등을 융자하고 있다.

둘째, 결산서 등에 의해 경영능력을 판단하여 담보없이 대출을 촉진하고, 법인에 대한 한도 특례를 실시하고 있다.

셋째, 농업경영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슈퍼 L기금과 결합하여 인정농업자의 경영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종합적으로 융자하고 있다.

1.5. 농업법인의 사회적 책임(CSR)

1.5.1. 거버넌스 CSR : 인증제도에 대한 대책

기업 경영에 있어 각종 인증제도를 활용하듯이 농업에서도 인증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증 취득을 위한 작업 절차, 내부기준의 명문화 등

경영자를 포함한 조직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 대책은 사업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근거에 따라 농축산물의 생산증명서 등 경영에 관련된 신뢰관계 구축에 연관되어 있다.

(1) 준법 및 윤리적인 경영

농업법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최신 동향 및 정보를 파악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행동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적용한다. 또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행동은 사회 상식에 비추어 적합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부패, 편의 공여, 뇌물과 카르텔 등의 부정행위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정당한 경쟁을 보장한다.

(2) 공개 및 책임 추구

농업법인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3) 리스크 대응의 철저

농업법인 경영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결정적인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위험과 대응 시나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리스크 대응을 준수한다.

(4) 협력회사 및 거래처와 일체화된 CSR 추진

협력회사 및 거래처와 일체화된 CSR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생산, 물류, 소비자의 신뢰성을 보장한다.

(5) 지속적인 경영노력

"기술·서비스·정보가 농업의 영역을 넘어 융합하여 새로운 농업을 창조한다"라는 일본농업법인협회의 아이디어에 따라 생산, 물류, 판매에 이르는 경영 감각을 닦고 지속가능한 기업을 지향한다. 또한 생산기술향상과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끊임 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여, 최적의 가격과 품질, 생산, 유통, 소비의 관계를 국내외에서 쌓아간다.

1.5.2. 시장분야 CSR : 네트워크화된 시장에 대응

거래처의 다변화와 요구의 고도화로 인해 다른 농업법인이나 유통업체 등과의 연계 협업화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법인 단독으로 어려운 연구활동과 광역적인 생산 공급, 브랜드 관리, 판매 등을 분업화하기 위한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실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품질 기준의 명확화 등 생산기술 및 거래 업체와 협상능력 향상 등 판매 및 브랜드의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1) 농축산물의 안전 및 고객의 건강 추구

농업법인이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이해하고, 그것에 부응하는 노력을 계속한다. 생산, 유통, 소비, 폐기에 관한 활동의 기록을 보유하고, 그것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한다. 농약 및 제품의 사용 또는 안전 확인 등에 대한 정보, 특히 이해관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2) 성실한 고객 지원

고객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응하는 것은 물론, 문의 및 불만 또는 분쟁 등에 관하여 성실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고객의 목소리는 필요에 따라 농업법인협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업계의 경험을 알리고자 노력한다.

(3) 고객정보 및 기밀 보호

고객의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며 마케팅 등 정해진 목적 이외에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합법적으로 보호한다.

(4) 지속가능한 소비 추진

생산, 유통, 가공 등 농업법인의 사업활동에 관련되는 사회 및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고객 구매의 판단자료를 전달한다. 또한, 농업법인, 자연환경 및 고객에게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현하기 위해 식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계몽활동과 적정 가격에 의한 시장거래 등을 추진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1.5.3. 환경분야 CSR : 환경보호에 대한 대책

농업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토양과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저농

약·무농약 재배 추진, 토양 분석에 근거한 적절한 시비를 실천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식품과 농업생산에 따른 잔여물을 이용한 사료 및 비료생산, 축산분뇨의 퇴비생산, 폐유 재활용 등 재생자원을 이용하는 순환형 농업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농업분야의 CO₂ 배출저감을 위한 "탄소 발자국"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앞으로의 환경부하의 저감과 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 오염방지

독성 및 위험화학물질의 대기 및 수중 배출 방지, 폐기물 감소, 생물에 포함된 전염병 등의 예방 등 특정 가능한 모든 형태의 오염방지에 노력한다.

(2) 지속가능한 자원이용

에너지 및 물자 등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수자원 보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자체가 자연환경에서 자원을 보관, 생명과 공생하고 있는 특성에 비추어 농업활동이 미치는 환경부하를 파악하여 부하저감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자원순환형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용한다.

(3) 기후변화 완화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파악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소시킨다.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한다.

(4)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확립

농업활동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특히 생물다양성에 대한 배려를 농업활동에 도입하여 100년간의 시간하에서, 자연환경 및 생명과 공생하는 농업을 지향한다.

(5) 자연환경 보호 및 복구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농업법인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생태계, 특히 생물다양성의 보호 및 회복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자연보호와 회복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교육과 계몽활동을 통해 전파한다.

1.5.4. 직장분야 CSR : 인재육성

농업인의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농업부문에 대한 고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진 경영단체는 지속적인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조건 등의 노동환경이 정비되어 있다. 또한 사업의 핵심 후계자육성과 직원의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는 등 경영체질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농업 및 생명종합산업으로 모든 사람과 희망을 공유할 수 있는 직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적 책임을 수행함과 동시에, 농업기술의 선구자적 자기혁신을 계속하고 자립적 농업경영을 수립한다.

(1) 고용주 의무 이행과 안정적인 고용관행

법률이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해고를 하지 않는다. 또한, 안정적인 고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규칙적인 노동력의 사용과 임시 노동의 과도한 사용을 하지 않는다. 또한 고용의 차별을 없애고 여성, 젊은 노동자, 장애인, 이민자 등 사회적인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2) 근무조건 및 사회적 보호의 철저

적당한 노동조건과 가능한 한 최상의 보상을 제공하고 법령이 요구하는 노동시간을 준수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한다. 또한 채용, 교육, 복지, 승진이나 해고 등 고용관행에 있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3) 직장 안전보건의 확보

노동환경의 안전위생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최선의 대책을 실시하여 직원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한다. 또한 직원의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방호복 등 장비를 제공하고 직원들에게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응급대응의 준비를 철저히 한다.

(4)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직원의 능력개발과 경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다른 산업과 해외 인력교류 등을 도입하여 생산, 물류, 판매에 관한 기술인력 육성에 주력한다. 또한 취농 학생에게 독립 창업지원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미래에 농업에 종사하고 직업으로 하기 위하여 농업 인턴쉽 등 잠재적인 직원의 수용을 추진하여 사업 상속의 선

택을 확대한다. 또한, 농업에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각 농업법인의 성공사례와 경영 노하우를 적극 공유한다.

(5) 경영자와 직원의 협조

직원이 노조를 형성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단체 교섭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한다. 직원의 건강과 행복을 추진하는 노동관리 협력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직원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존중한다.

1.5.3. 지역사회분야 CSR : 지역사회 공헌

지역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목표로 직판장이나 농업체험, 소비자교류 등 식품과 농업의 융합 활동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에 적응하여 계단식 논 등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조건불리지역이지만, 효과적인 토지이용을 실현하고 있다. 농업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상호이해를 추진하여 식품과 농업의 융화를 목표로 한다.

(1) 식품과 농업의 융합 추진

음식의 중요성, 농촌의 역할과 중요성을 사회와 공유하고, 농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을 실감하는 계몽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차세대 식문화를 담당할 청소년 교육 및 계몽활동을 추진한다.

(2) 대화와 협조 추진

지역사회의 관심과 기대, 우려를 이해하고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조직과 민간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과 공생하는 농업을 지향한다.

2. 농업법인의 활성화 방안

2.1. 기본방향

농업법인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농업법인제도의 설립 취지에 맞게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이 운영되도록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그 사업내용이 유사하며, 농업생산과 농업서비스(가공·유통·판매 등) 모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인의 육성목표와 대상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농업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경영능력을 제고하고 생산법인과 서비스법인간, 법인과 농협간, 법인과 연관 기업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농업법인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시행절차는 당면한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택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단기적으로는 현행 농업법인제도가 안고 있는 관리 및 운영상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농업경영체가 지향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이들 법인에 맞는 차별적인 농정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 및 구축하는 것이다.

2.2. 농업법인의 경영개선방안

2.2.1. 농업법인의 규모화 전략

첫째, 현재 조합원의 출자금 규모가 영세하고 배당금 지급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법인의 규모화를 위해 자기자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인경영체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출자규모를 법인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의무화시키고 법인의 사업도 출자규모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이는 설립된 법인의 사유화 방지와 구성

원간 사업의 공동화 촉진 효과 등 법인체 육성의 본래적인 목적에 기초한 정상적인 운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둘째, 시·군이나 농협, 협력 업체 등 지역으로부터 자본출자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법인체에 대해서는 지역발전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이 적극 출자 및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방식이 시설자금 중심이기 때문에 설립 이후 원료확보 자금부족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해있는 법인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료확보나 농작업의 계절성으로 수익성 보장이 어려운 법인체의 경우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경영 부실화는 처음부터 예상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설립 이후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운영자금 조달 문제는 정책 당국이나 법인 구성원 스스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넷째,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농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무제표와 결산서 작성은 필수적 요소이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지 법인체가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계업무만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영세한 법인규모와 수준에서는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인력보조 또는 임금보조 등 개별 법인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농조합법인별로 인력보조가 여의치 않은 경우 지역별로 영농조합법인의 회계업무를 전담할 세무회계사무소를 지정하고 정부와 법인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2.2.2. 농업법인의 경영 및 기술 네트워크

첫째, 경영 및 상담지도에 대한 상시체계 구축이다. 현재 농업법인의 경영기법이나 법인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없거나 있더라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상당한 법인체가 영농활동을 하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 법인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운영과 절차뿐만 아니라 법인화의 이점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서도 낮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법인경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교육과 경영지도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상시 지원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 풀(pool) 구성을 통한 상시지원시스템 구축을 수행할 농업법인협회의 설립 및 운영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농업경영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자금 수혜법인에 대해서는 의무화 조치가 필요하다.

둘째, 농업법인의 상당수가 경영관리의 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경영부실의 방지뿐만 아니라 정책지원 사업체의 사후관리차원에서 적절히 경영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법인의 판매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대형유통업체 입점시 지역법인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축적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이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이 중요하다. 현재 이러한 기술개발과 제품개발에 대한 지역단위의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농진청이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등과 같은 전국 단위의 기관이나 연구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단위에서 농업법인체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유관기관의 공동연구와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넷째, 인력양성 및 교육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농업법인 경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보급 및 지도·시장개척 및 마케팅 지원 등의 농업법인 창업·보육지원 및 컨설팅과 농업법인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인력양성은 크게 최고경영자와 마케팅 및 기술전문가로 세분화하여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업체 및 농협과의 파견 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농업법인의 판로 다각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체험마을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촌체험마을 내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업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가능하다.

여섯째, 농업법인의 기술관리 및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설투자 규모가 큰 농업법인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여 경영효율을 제고한다.

2.2.3. 지역농협 및 전·후방 연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첫째, 지역농협과의 경합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법인과 농협간의 상호출자를 유인하거나, 법인 설립시 사업계획서 평가기능을 농협이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협이 농업법인에 대해 적절한 정책자금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용평가뿐만 아니라 경영컨설팅을 포함하여 경영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정책자금 집행 및 법인의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형별 농업법인과 농협과의 전략적 제휴이다. 농업생산법인은 농업생산경영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농가와 동일하게 농협의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농협은 농업법인의 조합 참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농업법인을 조합원으로 적극 유치하는 자세를 보이도록 한다. 한편 가공·유통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서비스 위주 법인의 경우는 대부분 농협의 경제사업과 중복되어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으나, 되도록이면 법인과 농협과의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력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아울러 지역농협은 기존의 대규모 농업서비스 법인과 경합하는 사업의 신규참여는 지양하여 농업서비스 법인의 발전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상생의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농업법인과 전후방 연계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연계방안이나 소비자와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가공 및 유통법인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 및 식자재업체와의 연계 등 농상공 연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6-5> 농업법인제도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 주체별 업무분담관계

구분	중앙 정부	통계청	시도	사군	지역 농협	농업 법인
운영 및 경영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의 경제·재정적 규모 확대 ◦자기자본의 비율 증대 ◦타인자본 유치 활성화 ◦운영자금에 대한 지원 ◦세무 및 회계분야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의 경영 및 기술능력 제고 ◦경영 및 상담지도에 대한 상시체계 구축 ◦사후관리 및 컨설팅 지원 ◦기술 및 제품개발의 축적과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농협과의 협력체계 구축 ◦농업법인과 지역농협간 상호 출자 확대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기능 수행 ◦농업법인과 지역농협간 전략적 제휴 구축 					

2.3. 농업법인의 제도개선방안¹¹⁾

2.3.1. 농업법인의 정책목표 구체화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와 관련된 향후 시대적 요구는 기존 가족농경영체에서 가계와 경영이 분리된 농업경영체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적 경영체질을 강화하여 법인체의 경영기반을 안정화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의 유형에 맞는 차별적인 농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농업법인을 농업생산법인과 농업서비스법인으로 유형화하여 법인을 구분하여 그에 알맞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농업생산법인에 대해서는 농가와 같은 농업경영체 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농업서비스법인에 대해서는 비농업부문의 자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농업법인의 유형화로 발생하는 농업생산과 서비스법인간의 괴리 문제는 다양한 형태의 수직통합(vertical integration)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 따라서 농업법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기적 발전 방향성은 수직적 통합을 어떻게 유도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수직적 통합에는 생산법인이 유통업에 진출하여 유통경로를 통합하는 전방통합(forward vertical integration)과 유통법인 혹은 가공법인이 생산과정을 소유하여 통합하는 후방통합(backward vertical integration)이 있다. 농업생산법인은 전방통합형을 통해 출하는 물론 가공, 도소매에 까지 참여하므로 원산지 관리 등에서 소비자 신뢰를 얻기 쉬우며, 2·3차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농업생산법인에 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유통·가공 등에 대한 전문성이 미흡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하며 협동조합적 경영의 한계 때문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경우 수익성 감소로 인해서 적자 및 부실경영이 될 우려가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후방통합형은 유통·가공법인이 생산단계를 소유하지 않고 단지 계약에 의해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유형이다. 후방통합형은 효율성이 높고 브랜드 파워 등이 커 부가가치 창출력이 높아 농업생산자나 생산법인에게도 추가적인 소득 창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후방통합형의 효과는 산지에서 생산조직과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원료농산물을 얼마만큼 흡수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가공회

11) 권용덕(2008)을 참조.

사들은 수입품 위주로 원료조달을 하고 있고, 농업서비스법인 또한 해당지역에서 원료확보나 인력충원이 미흡하여 지역농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있다. 해당 지역의 원료농산물 사용비율에 대한 하한선 제한을 두는 것도 지역농업과의 연계성을 높여 후방통합형의 사업효과를 높이는 방법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2.3.2. 농업법인의 사후평가지스템 구축

현재 농업법인의 실패는 한마디로 법인 설립은 과열 상태이고, 법인경영은 부실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인설립 자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설립 이후에는 사후관리에 대해 철저히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농업법인은 이를 전담할 관리 기구가 없으며, 영세하거나 부실한 법인체에 대한 현황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농업법인체가 설립되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것은 현지의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법인체의 목적·경영능력·지역에서 역할·타사업과의 유기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설립을 인가하고 사후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법인의 착근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보다 적합하기 때문이다. 현재 야기되는 많은 문제점들은 기초자치단체가 법인체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기 때문에 야기된 측면이 없지 않다.¹²⁾

장기적으로는 농업법인을 포함한 농업경영체 전체를 평가·인가·관리하는 전담기구 신설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관리능력과 관심 정도에 따라 농업법인체의 운영 격차가 지역별로 크게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법인등록만 되어 있고 사실상 법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거나 회계신고를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기구가 법인통계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관리하도록 한다. 관리기구는 유명무실한 법인들에 대해 일차적으로 자발적 해산을 권고한다. 그 다음 자발적으로 해산하지 않는 법인 중에서 강제해산을 해도 문제가 없는 법인은 관리기구가 직권으로 해산한다. 부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리 기구의 직권해산이 어려운 법인은 부실 법인의 청산과 같은 범주에서 처리하도록 한다.

현재 이를 전담할 수행기관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통계청과 지자체가 각각 업무를 분담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이 매년 「농어업법인체 통계조사

12) 통계청에서 법인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업체리스트 작성하여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지역별로 재분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사를 통해 부실법인을 청산하는 방법이 현행시스템을 활용하는 단기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나타난 부실업체 리스트를 작성하고,¹³⁾ 이를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는 관리와 재실사를 통해 정리하도록 한다. 물론 장기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이 기구가 부실업체 정리문제도 수행하도록 한다.

2.3.3. 농업법인의 세제지원제도 강화

현재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은 대부분 시한부로 되어 있고 그 중 200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세제상의 지원은 일차적으로 면제 및 감면 시한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현재 대부분 농업법인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세제시한 연장과 지원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즉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상의 우대내용을 검토하여 조세상의 우대를 계속할 것인지, 우대를 철회할 것인지 결정하고, 우대를 계속할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이 아닌 확정적 형태로 세제를 제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농업법인체의 자본축적을 활성화시키고 재정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세제나 지원대책의 추가나 도입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6-6> 농업법인제도의 개선을 위한 각 주체별 업무분담관계

구 분		중앙 정부	통계청	시도	사군	지역농협	농업 법인
농업법인제도 개 선	·법인제도의 정책적 목표와 방향 제시	○					
	·법인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	○		○	○	○	
	·부실법인 정비						
	·부실법인 조사 및 파악, 리스트 작성		○				
	·부실법인 관리와 재실사 및 청산절차			○	○		
	·우량지표 및 부실지표 개발		○				
	·세제상 지원제도 강화 및 정비	○					

13) 이외에도 통계청은 법인체 조사시 현재 생산·운영중심의 조사에서 벗어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청취하는 문항을 신설하고, 농업법인체의 경영진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업법인에 적합한 우량지표 및 부실지표를 개발하여 공표함으로써 농업법인에 대한 운영과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 7 장

요약 및 결론

농업법인제도는 1990년 기존의 산지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경쟁력있는 조직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농업법인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정과 관리가 미비하여 농업법인제도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고, 유명부실하거나 부실경영 법인이체가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체간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경영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출한다.

□ 농업법인제도 및 정책현황

농업법인제도는 1989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에서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 육성방침이 정해지고, 1990년 4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농업법인경영의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 이후 1993년과 1994년, 1999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과 그 시행령의 개정에 의해 수정되었다. 1999년 2월에는 농업법인제도의 근거법령이 새로 제정된 「농업·농촌기본법」으로 바뀐 데 이어 2003년에 이 법이 개정되었으나 내용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또한 2009년에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 인해 영농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합명회사(合名會社) 또는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차이는 “협업적 농업경영”과 “기업적 농업경영”이다. 원칙적으로 협업경영은 법인 구성원(=조합원)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의 이익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법인의 발기인 또는 구성원 수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중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 2인 이상,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 각 1인 이상, 유한회

사는 발기인 2~50인과 사원 1인 이상, 주식회사는 발기인 3인 이상으로 설립한다. 영농조합법인의 의결권은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인 1표이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출자 14구좌당 1표(합명·합자·유한회사), 주식 1주당 1표(주식회사)이다.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농업회사법인은 조직 형태에 상관없이 농업인이 법인의 대표를 맡고, 업무집행권 소유자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농업법인 지원정책은 농업법인도입 당시 농업법인에 대해 개별 농가와 대등한 지원 및 법인으로서의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였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일반농가 수준의 지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계화영농단을 포함하여 농기계구입자금의 50%를 보조하였다. 그 이후 영농조합법인을 품목별 전문 경영체로 육성하기 위해 우선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1995년부터 ‘영농규모적정화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영농자금, 농기계자금, 농지 구입자금, 유통·가공자금 등을 지원하였다. 1996년 1월에는 농업법인의 자금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자금 성격의 농기업경영자금을 신설하였다.

농업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국세의 법인세·양도세·부가가치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지방세의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와 법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한 지방세법의 면제 및 감면조치, 그리고 조합원 또는 사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조치가 있다.

□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분석

2008년 현재 농업법인 사업체는 6,003개로 전년에 비해 8.8% 증가하였다. 상용근로자 규모별 사업체 분포를 보면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의 87.3%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법인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인당 경지면적은 8.8ha로 전년에 비해 9.3% 감소하였는데, 2008년 우리나라 농가당 경지면적은 1.5ha임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법인의 규모화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농업법인을 사업유형별로 분류하면 농업생산(39.9%), 유통판매(21.9%), 가공판매(16.0%), 농업서비스(6.9%)의 순이었다. 전년에 비해 농업생산 및 농업서비스, 기타사업은 소폭 증가한 반면, 가공판매 및 유통판매의 농업법인은 증가 추세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총 판매액은 5조 7,90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4.1% 증가하였으며, 법인당 판매액은 12억 9천만 원으로 8.3% 증가하였다. 법인유형별로는 유통법인이 2조 256억 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업생산법인이 1조 6,596억 원으로 나타났다.

농업법인의 부채비율(부채/자본)은 193.3%로 전년에 비해 4.8%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8년 전산업(제조업) 부채비율이 129.8% (123.2%)임을 감안할 때 농업법인체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법인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7%에 불과한데, 이는 2008년 전산업(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은 18.6%(20.4%),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0%(5.9%)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업법인의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17.1원, 당기순이익은 21.6원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2008년 전산업(제조업) 매출 1,000원당 영업이익은 50.0원(58.9원)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농업법인 경영분석의 도구로서 수익성·안정성·성장성지표 등이 있다. 수익성 지표로서 농업법인의 법인당 총자본 이익율은 2008년 7.9%로 나타났지만, 법인당 자본투입량에 비해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성이 둔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2008년 현재 농업법인의 매출액 순이익율은 2.2%로 2000년 0.6%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지표의 경우 2008년 현재 유동자산 구성비는 44.7%로 2000년 이후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동부채 구성비는 2008년 현재 39.7%로 2006년 37.2%, 2007년 39.0%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현재 농업법인당 유동비율은 112.7%로 기업의 유동성이 건전한 상태로 판단되는 유동비율 200% 이상이 되어야 하는 유동비율의 건전성 판단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법인의 부채유동성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성장성 지표의 경우 2008년 현재 농업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은 2001년 24.2%에서 2008년 4.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법인의 외형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법인의 이익 증가율 또한 2001년 200%에서 2008년에는 이익 증가율이 39.3%로 하락해 당기순이익의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법인 유형별 효율성 분석

비모수적 효율성 측정방법 중에서 DEA는 회귀분석법과는 달리 사전적으로 구체적인 함수형태를 가정하고 모수(parameter)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형계획법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집합에 적용되는 몇 가지의 공준을 가지고 평가대상의 경험적인 투입요소와 산출물간의 자료를 이용하여 경험적 효율적 프론티어를 도출한 후 평가대상들이 효율성 프론티어상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의 여부로써 비효율성을 측정한다.

농업생산법인을 대상으로 DEA모형에 의해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순수기술효율

성의 값을 추정하였다. 기술효율성은 0.61로 추정되었으며,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분리해보면 규모효율성이 0.92로 계산된 반면 순수기술효율성은 0.67로 추정되었다. 분석대상 726개 농업생산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23개(3.58%),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72개(9.92%),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94개(12.95%)로 분석되었다. 농업생산법인의 상태가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인 법인은 458개(63.1%),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인 법인은 104개(14.3%),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법인은 164개(22.6%)로 나타났다. 효율성을 분석한 726개 농업생산법인 중 특정 법인의 사례를 통해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별 측정된 변수 값과 효율적 가상지점 변수 값을 비교해 보면, 매출원가는 494.2백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28.1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입요소 중 직원수에서는 1명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가공법인을 대상으로 DEA모형에 의해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의 값을 추정하였다. 기술효율성은 0.79로 추정되었으며,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분리해보면 규모효율성이 0.94로 계산된 반면 순수기술효율성은 0.84로 추정되었다. 분석대상 484개 농업가공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19개(3.93%),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69개(14.26%),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57개(11.78%)로 분석되었다. 농업가공법인의 상태가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인 법인은 224개(46.3%),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인 법인은 61(12.6%),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법인은 199개(41.1%)로 나타났다. 효율성을 분석한 484개 농업가공법인 중 특정 법인의 사례를 통해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별 측정된 변수 값과 효율적 가상지점 변수 값을 비교해 보면, 매출원가에서 94.7백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2.7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원수에서 1명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유통법인을 대상으로 DEA모형에 의해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의 값을 추정하였다. 기술효율성은 0.78로 추정되었으며,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분리해보면 규모효율성이 0.93로 계산된 반면 순수기술효율성은 0.84로 추정되었다. 분석대상 587개 농업유통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21개(3.58%),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92개(15.67%),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39개(6.64%)로 분석되었다. 농업유통법인의 상태가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인 법인은 142개(24.2%),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인 법인은 42개(7.2%),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법인은 403개(68.7%)로 나타났다. 효율성을 분석한 587개 농업유통 법인 중 특정 법인의 사례를 통해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별 측정된 변수 값과 효율적 가상지점 변수 값을 비교해 보면, 매출원가에서 75.7백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3.7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수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2명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1.7명으로 직원수에서 0.3명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서비스법인을 대상으로 DEA모형에 의해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의 값을 추정하였다. 기술효율성은 0.77로 추정되었으며,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분리해보면 규모효율성이 0.89로 계산된 반면 순수기술효율성은 0.85로 추정되었다. 분석대상 108개 농업서비스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11개(10.19%),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35개(32.41%),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11개(10.19%)로 분석되었다. 농업서비스법인의 상태가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인 법인은 48개(44.4%),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인 법인은 11개(10.2%),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법인은 49개(45.4%)로 나타났다. 효율성을 분석한 108개 농업서비스법인 중 특정 법인의 사례를 통해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별 측정된 변수 값과 효율적 가상지점 변수 값을 비교해 보면, 매출원가에서 72.6백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5.2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수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7명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1.8명으로 직원수에서 5.3명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기타법인을 대상으로 DEA모형에 의해 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의 값을 추정하였다. 기술효율성은 0.47로 추정되었으며, 기술효율성을 규모효율성과 순수기술효율성으로 분리해보면 규모효율성이 0.81로 계산된 반면 순수기술효율성은 0.58로 추정되었다. 분석대상 284개 농업기타법인 중 효율성 값이 1인 효율적인 법인 수는 기술효율성에서는 6개(2.11%), 순수기술효율성에서는 35개(12.32%), 규모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10개(3.52%)로 분석되었다. 농업기타법인의 상태가 규모에 대한 보수 증가(IRS)인 법인은 241개(84.9%), 규모에 대한 보수 불변(CRS)인 법인은 10개(3.5%),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DRS)인 법인은 33개(11.6%)로 나타났다. 효율성을 분석한 284개 농업기타법인 중 특정 법인의 사례를 통해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별 측정된 변수 값과 효율적 가상지점 변수 값을 비교해 보면, 매출원가에서 359.6백만 원이,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17.3백만 원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수는 측정된 변수 값(현상치)이 9명이고 효율적 가상지점의 변수 값(목표치)이 4.3명으로 직원 수에서 4.7명이 과잉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업법인의 효율성 요인 분석

농업법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인(drivers)들이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를 분석하여, 전략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외부환경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내부 능력 분석 결

과를 종합하여 농업법인의 전략적 시사점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농업법인에 대한 정치환경요인은 크게 법률을 통한 규제와 세제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농업법인에 관한 법률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따라 사업내용, 출자제한,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인설립 및 조직변경, 컨설팅 및 자금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환경은 경제권 내의 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제적 요인을 의미하지만 농업법인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경제성장, 이자율, 환율 및 물가상승 등이 주요한 요소이다.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은 사회의 문화적, 인구통계학적, 종교적 상황에서 파생되는 것으로서 소비패턴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 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최근에 인구구조에 따른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는 농업법인의 신제품 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사회의 전반적인 기술발전추세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기존 제품의 쇠퇴와 함께 새로운 제품을 출현시키며, 전통적인 산업쇠퇴와 함께 새로운 산업의 형성을 초래하기도 한다.

산업구조분석은 산업의 경쟁강도와 수익성 및 산업의 구조적 매력도를 결정하는 5가지 경쟁요인을 분석하여 농업법인의 산업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환경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경쟁요인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쟁의 원인과 각각의 경쟁 강도를 파악하며, 산업의 이윤잠재력, 즉 산업의 매력도를 파악한다.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생산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DEA에 의해 계산된 기술효율성 값의 역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설명변수로는 자산규모, 자본규모, 법인유형, 법인지역, 사무실, 고용종사자수,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였다.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일수록, 자본규모가 클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자산규모가 적은 법인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기술효율성은 자본규모가 클수록, 자산규모는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효율성은 사무실이 있는 법인일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농업가공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본규모가 클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수기술효율성은 자본규모가 클수록, 고용인원이 적을수록, 사무실이 없는 법인일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효율성은 사무실이 있는 법인일수록, 운영기간이 오래된 법인일수록, 고용인원이 적은 법인일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본규모가 클수록, 법인지역이 광역시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수기술효율성은 자본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효율성은 자산규모가 적을수록, 자본규모가 클수록, 고용종사자 수가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서비스 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농업회사법인일수록, 운영기간이 짧은 법인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수기술효율성은 영농조합법인에 비해 농업회사법인일수록, 운영기간이 짧은 법인일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obit모형을 이용하여 농업기타법인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일수록, 법인지역이 광역시일수록, 사무실이 없는 법인일수록 기술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순수기술효율성은 자산 및 자본규모가 클수록, 농업회사법인에 비해 영농조합법인일수록, 사무실이 없을수록, 고용종사자수가 적을수록, 운영기간이 짧은 법인일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규모효율성은 운영기간이 오래될수록, 고용종사자수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일본의 농업법인 사례

일본의 농업법인을 살펴보면 제도상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조합의 형태를 가진 농사조합법인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형태를 가진 회사법인이다. 또 이러한 법인 중에서 농지법 제2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농업생산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법인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농지 등에 관련된 제권리의 취득이 가능하다.

일본 농업법인의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현재 1~3억엔 규모의 법인체가 전체의 3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억엔 이상의 법인체의 비중은 2000년 3.4%에서 2004년에는 4.5%, 2008년에는 6.1%로 대규모의 법인체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농업법인의 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67% 유한회사로 기업형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농업법인은 다각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생산뿐만 아니라 판매, 가공, 관광을 연계한 법인의 매출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생산+판매+관광을 연계한 농업법인의 매출액 증가율은 126.8%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농업법인화의 장점은 크게 경영상의 이점과 세제우대, 자금차입 및 농지취득 등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경영상의 이점으로는 첫째, 경영관리 능력의 향상을

통한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다. 둘째, 법인 설립으로 대외 신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법인체 설립으로 농업종사자도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복리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넷째, 후계인력의 확보와 새로운 농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가능하다.

농업법인의 설립을 통한 제도상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제우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임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의 손금산입을 통한 절세가 가능하며, 적자금을 5년간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감소할 수 있다. 둘째, 자금 확보차원에서는 융자금액의 한도가 확대되고, 보증인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농지취득의 경우에도 농업생산법인은 농지의 현물출자를 통해 농지 취득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경영기반 확립을 위해 Super L기금을 통해 법인을 포함한 경영체 육성 및 경영개선을 위한 장기자금을 지원하고, 경영체육성 종합 융자 제도를 통해 단기운전자금, 농업경영개선촉진자금 (슈퍼 S기금) 등을 융자하고 있다.

□ 농업법인의 경영 활성화 방안

1) 농업법인의 규모화 전략

첫째, 현재 조합원의 출자금 규모가 영세하고 배당금 지급이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법인체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자기자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법인경영체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출자규모를 법인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의무화시키고 법인의 사업도 이들 출자된 것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시·군이나 농협, 협력 업체 등 지역으로부터 자본출자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법인체에 대해서는 지역발전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이 적극 출자 및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방식이 시설자금 중심이기 때문에 설립 이후 원료확보 자금부족 등 운영자금 부족으로 자금난에 처해있는 법인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용자금의 성격에 따라 장기자금과 단기자금을 구분하여 융자할 필요가 있으며, 결산서 등을 평가하여 무담보 대출도 적용되어야 한다.

넷째,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농법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무제표와 결산서 작성은 필수적 요소이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지 법인체가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에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경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2) 농업법인의 경영 및 기술 네트워크

첫째, 경영 및 상담지도에 대한 상시체계 구축이다. 법인경영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교육과 경영지도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상시 지원 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

둘째, 농업법인의 상당수가 경영관리의 애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경영부실의 방지뿐만 아니라 정책지원 사업체의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적절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 및 제품개발에 대한 축적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이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개발이 중요하다.

넷째, 인력양성 및 교육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이다. 인력양성은 크게 최고경영자와 마케팅 및 기술전문가로 세분화하여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실용적인 교육을 위해 관련 업체 및 농협과의 파견 교육 등을 통해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농업법인의 판로 다각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체험마을과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촌체험마을 내에 직판장을 설치하여 농업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발전기금으로 활용가능하다.

3) 지역농협 및 전·후방 연계기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첫째, 지역농협과의 경합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법인과 농협간의 상호출자를 유인하거나, 법인 설립시 사업계획서 평가기능을 농협이 수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형별 농업법인과 농협과의 전략적 제휴이다. 농업생산 법인은 농업생산경영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별농가와 동일하게 농협의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법인과 전후방 연계관계에 있는 기업과의 연계방안이나 소비자와의 교류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가공 및 유통법인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 및 식자재업체와의 연계 등 농상공 연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농업법인의 제도 개선방안

1) 농업법인의 정책목표의 명확화

농업생산법인에 대해서는 농가와 같은 농업경영체 차원의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농업서비스법인에 대해서는 비농업부문의 자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수직적 통합에는 생산법인이 유통업에 진출하여 유통경로를 통합하는 전방통합과 유통법인 혹은 가공법인이 생산과정을 소유하여 통합하는 후방통합이 가능하다.

2) 농업법인의 사후평가시스템 구축